

구조조정 지원세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2018. 6



구조조정 지원세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2018. 6.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성 훈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 훈 공인회계사

이 서 현 연구원

목차

I. 서론	7
II. 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조세제도와 쟁점	9
1. 서(序)	9
가. 연구의 범위	9
나. 기업 소유구조 개선·현물출자와 사업구조조정 제도와 과세특례의 의의	12
2. 현물출자 및 사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과세특례	21
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제도 및 특례	21
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25
3. 쟁점	32
가. 일몰연장 여부 또는 상시화	32
나. 과세제도의 정비	38
다. 쟁점 요약	43
III. 주요국의 과세제도 운영현황	45
1. 미국	45
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제도	45
나. 사업구조조정 과세제도	48
2. 영국	50
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제도	50

나. 사업구조조정 과세제도	53
3. 일본	55
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제도	55
나. 사업구조조정 과세제도	61
4. 독일	71
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제도	71
나. 사업구조조정 과세제도	78
5. 주요국의 과세체계 비교	81
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제도	81
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제도	85
IV. 시사점	88
1. 과세특례의 계속적 운영 여부	88
가. 소유구조 개선	88
나. 사업구조조정	93
2. 과세제도의 정비	96
가. 공통사항	96
나. 소유구조 개선	99
다. 사업구조조정	101
참고문헌	104

표 목차

〈표 II-1〉 연구대상 세제 구분 및 요약	11
〈표 II-2〉 사업구조조정 제도 구분	20
〈표 II-3〉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34
〈표 II-4〉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 추이	35
〈표 II-5〉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금액	36
〈표 II-6〉 소유구조 개선과 사업구조조정 세제의 쟁점	43
〈표 III-1〉 일본의 적격 여부에 따른 현물출자(주식교환) 세무상 분개 차이	57
〈표 III-2〉 일본의 적격현물출자(주식교환) 요건(2017년)	58
〈표 III-3〉 일본 대법인의 100% 완전자법인 결손금공제한도(2012-2018)	64
〈표 III-4〉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재편계획 인정요건	68
〈표 III-5〉 일본 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 제도 세부담경감 실적	69
〈표 III-6〉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재편계획상 인정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세율	71
〈표 III-7〉 현물출자(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84
〈표 III-8〉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87
〈표 IV-1〉 현물출자 특례 운영기간	91

그림 목차

[그림 II-1] 순환출자의 가상사례	14
[그림 II-2] 지주회사의 가상사례	15
[그림 II-3] 주식현물출자의 이후 지분	18
[그림 II-4]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이중과세	41
[그림 IV-1] 지주회사의 누적 개수	89
[그림 IV-2] 지주회사와 외국자회사에 대한 조세지출금액	90
[그림 IV-3] 연도별 C등급 기업현황과 워크아웃신청비율	94

I. 서론

-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특법”)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조특법」 제2장 제5절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현물출자 등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사후적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장을 달리하여 제5장의10에서는 사전적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조특법」의 대부분 세제는 한시규정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많은 구조조정세제가 2018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 및 경영악화에 따른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세제는 모두 2018년 말을 끝으로 과세특례가 일몰됨
 - 따라서 2018년 일몰되는 과세특례에 대해 일몰연장·개정 여부 및 개정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조특법」상 2018년 일몰되는 구조조정세제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분석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과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주식교환(“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소유구조 개편을 위한 현물

출자 등에 대한 세제로 분류함

- 경영악화가 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에 대한 지원세제는 목적이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로 분류함
- 본 연구는 두 가지 대상세제에 대한 분석 및 해외사례 등과 비교를 통해 「조특법」 상 향후 구조조정세제의 방향에 대해 검토함
- 먼저, 우리나라 세제의 현황과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쟁점을 분석함
 - 이후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를 비교법적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세제와의 주요 차이점을 검토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세제의 일몰 여부 및 개정방향 등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함
 - 「법인세법」에 규정된 구조조정세제 등은 필요한 경우 비교 등을 위해 검토될 수 있지만 시사점 등은 「조특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다만 구조조정세제는 세제의 분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모든 주요국의 사례가 조사되거나 모든 배경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구조조정세제는 그 세제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구조조정을 관할하는 법령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나 세제가 연구의 중심이므로 구조조정 관련 법률에 대한 합리성은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함
 - 이러한 법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등과 관련 하위 법령이 있음
 -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알려지지 않은 구조조정세제가 존재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는 그 국가의 구조조정 관련 법령과 연계되고 그 국가의 기업소유구조의 성향,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Ⅱ. 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조세제도와 쟁점

1. 서(序)

가. 연구의 범위

-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세제를 담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restructuring 또는 umstrukturierung)이란 용어는 그 법적 개념이 정의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 또는 학설·판례에 따라 해석되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은 협의의 개념으로 기업 소유구조 개편만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광의의 개념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재무·소유·영업·법적 구조의 최적화 행위로 요약할 수 있음¹⁾
 - 「조특법」상의 기업구조조정도 주식교환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재무구조 개선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특례 중 2018년 일몰이 되는 현물출자(또는 주식교환)와 관련된 부분과 영업·재무 등 사업상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상황에 직면하는 기업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함
 - 다만, 유사 관련 세제는 관련 거래의 근원적인 과세체계나 대상세제와의 비교를 위해 참고적인 목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
 - 따라서 연구 대상이 되는 세제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주회사 및

1) 김종욱(2014), pp. 6~7.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소유구조 개선” 또는 “현물출자 등”)와 사후적·사전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무구조개선계획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과세특례임(“사업구조조정”)²⁾

- 보다 구체적인 대상세제는 2018년 일몰되는 현물출자 및 사업구조조정 세제이나 일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음
 -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외국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2018년에 일몰되는 현물출자 관련 세제이므로 연구의 대상에 포함됨
 - 사업구조조정세제는 재무구조개선계획과 사업재편계획(두 계획을 합하여 “계획”)과 관련된 것 중 2018년에 일몰되는 대상은 모두 포함하며, 이전에 일몰되었거나 계획 간 세제를 대칭적으로 보기 위해 일부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세제도 포함함
 - 2017년 일몰된 「조특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와 재무구조개선계획과 관련 없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는 포함함
 - 반면에 2012년 일몰된 「조특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사업재편계획 쪽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위에서 제외함
 - 「법인세법」상 규정된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 등은 비교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연구의 목적 자체는 아님

2) 이러한 용어는 법리적이거나 강학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거래의 원인이 기업소유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사업재편 또는 사후적 구조조정인지에 따라서 “소유구조 개선”(또는 “현물출자”)과 “사업구조조정”으로 분류함. 따라서 기업 간 주식교환(제121조의 30)이나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제121조의32)는 기업소유구조가 변경되는 측면이 있지만 거래의 원인이 사업재편을 위한 것이므로 후자에 속하게 됨

〈표 II-1〉 연구대상 세제 구분 및 요약

구분	세제(조세특례제한법) ¹⁾	대상	대상금액	일몰	혜택
현물출자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 대상법인 법인주주	주식현물출자 양도차익 현물출자 등 받은 주식과의 차액 현물출자 양도차익	차분 시까지 이연 차분 시까지 이연 4y+3y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지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법인	자산양도차익	4y+3y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주주 대상법인 대상법인 대상법인 법인주주 주주	주식양도차익에서 인수·변제금액 수증이익 수증이익 자산증여가액 양도차익	손금산입 4y+3y 4y+3y 손금산입 세액감면 또는 비과세 4y+3y
-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대상법인	채무면제금액	2018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법인	주식양도차익	2017
	제46조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지배주주	양도차익	차분 시까지 이연
	제47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²⁾	대상법인	양도차익	4y+3y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법인	자산양도차익	4y+3y
	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법인 대상법인	주식양도차익에서 인수·변제금액 수증이익	손금산입 4y+3y
	제121조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대상법인 법인주주	수증이익 자산증여가액	4y+3y 손금산입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법인	채무면제금액	4y+3y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지배주주	주식양도차익	차분 시까지 이연
	제121조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법인	양도차익	3y+3y
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용 특례	대상법인	적격합병시 주식비율	70/100	

주: 1) 이미 일몰된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는 대상에서 제외함.
 2) 다른 조와는 달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요건이 없으나, 엄중 요건이 있음.
 자료: 각 조문내용을 저자 정리함

나. 기업 소유구조 개선·현물출자와 사업구조조정 제도와 과세특례의 의의

1) 기업 소유구조 개선과 현물출자

가) 기업 소유구조 개선

- 현물출자 등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과 외국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 시 세제지원을 위한 것임
 -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규제를 두면서 설립을 허용함
 - 지주회사 도입이 다수 사업부문의 분사화를 통해 한계사업부문을 정리·매각하거나 계열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진출을 선호하는 외국투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임³⁾
 - 이전의 금지이유인 경제력 집중의 발생 등 지주회사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행위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경영효율성 증대, 출자구조의 단순화 등이며, 단점으로는 경제력 집중, 주주의 사업회사에 대한 권리 제약 등임⁴⁾
 - 장점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복잡한 출자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대리인비용의 감소,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분사화를 통해 용이한 비주력 사업부문 매각 등의 사업구조조정 편의성, 배당정책의 합리화임
 - 단점은 재벌체제 강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지주회사의 중간 개입으로 주주의 사업 자회사에 대한 권한 감소, 경기침체 시 사업이 없는 지주회사의 이익조작 가능성임

3) 공정거래위원회, 「持株會社의 制限的 許容方案」, 1998. 4,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51, 검색일자: 2018. 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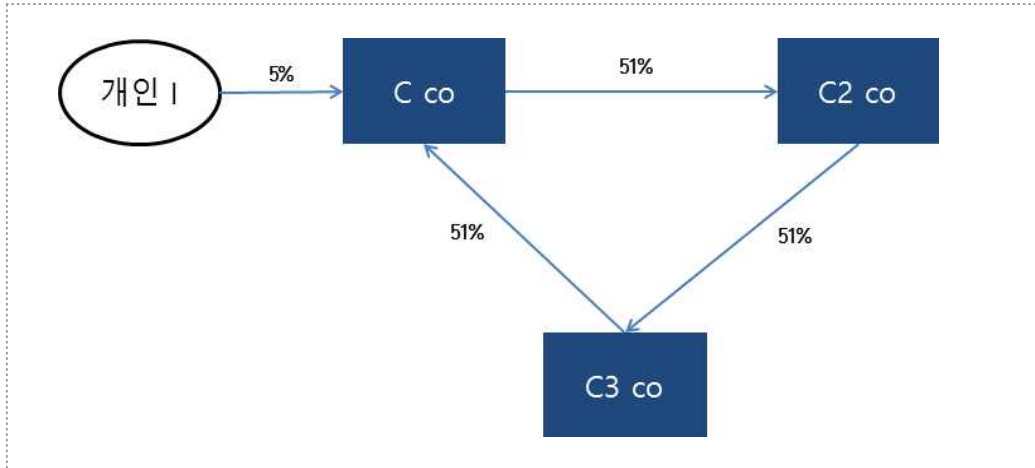
4) 권상로(2013), pp. 520~521.

-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도입의 주목적은 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함⁵⁾
 - 당시 대규모기업들은 순환적이고 중층적으로 순환출자가 얽혀 있으면서도 그 최고점에는 작은 비율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이 존재하였음
 - 이러한 출자구조에서는 대리인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주주권의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반면에 지주회사는 하층적·단선적 소유구조를 통해 지배주주 개인은 지주회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사업 자회사들은 각자의 자율경영을 통해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순환출자(상호출자)는 소유구조 측면에서 무분별한 기업의 지배력 확대를 통해 소유·지분에 따른 의결권에 대한 왜곡 및 상호 경제적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존재함
 -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법적 지분 이외에 자신이 지배하고자 하는 회사의 하위회사를 통해 지배하고자 하는 회사의 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경제적 관계가 순환하여 미치게 됨
 - 극단적인 예로 아래 [그림 II-1]에서 개인 I가 C co의 최대주주이거나 한번만이라도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C co의 5% 지분만으로 C co와 모든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음
 - C co를 통해 C2 co를 지배하고, C2 co를 통해 C3 co를 지배하며 지배하에 있는 C3 co를 통해 C co의 합산지분율이 56%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5) 김동운(2011),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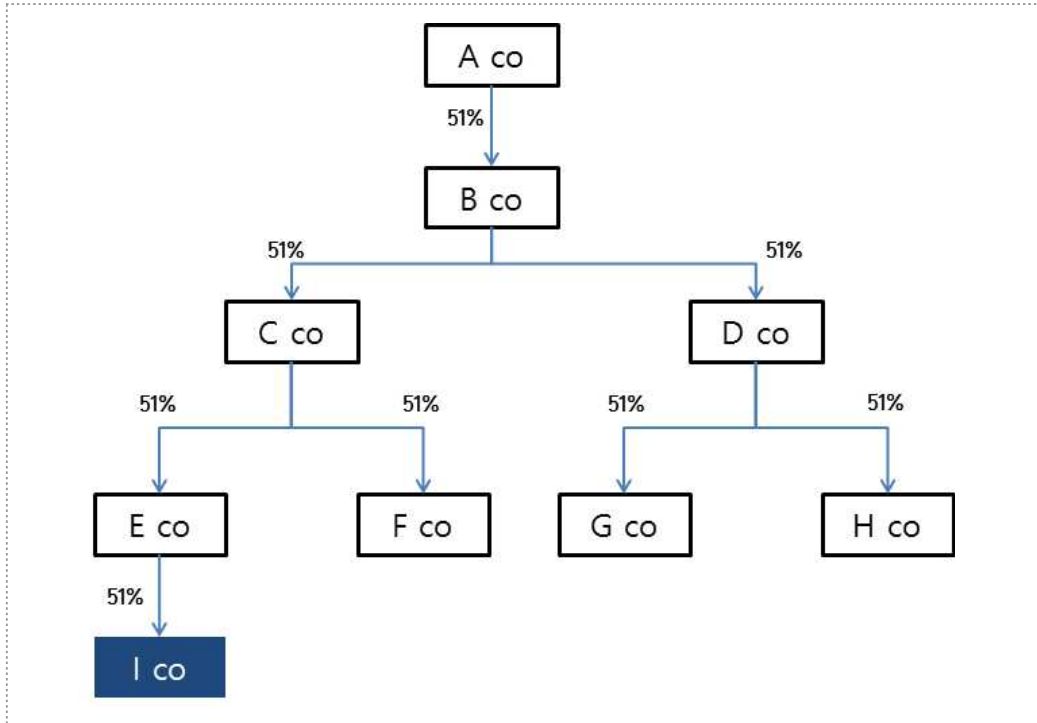
[그림 II-1] 순환출자의 가상사례



자료: 저자 작성

- 반면에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주회사에서도 순환출자 수준은 아니지만 의결권의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권은 의결권의 과반 이상을 소유하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지주회사체계에서는 계속적인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이룰 수 있음
 - 아래 [그림 II-2]에서 A co를 지배할 수 있다면 연속적인 수직계열화를 통해 자회사 지분을 제한적(여기서는 51%로 가정)으로 지배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계속적인 사업확장이 가능함
 - 예를 들어 A co에 대한 지분율이 100%라 하더라도 B, C, E, I에 대한 간접 지분율(기업 가치에 대한 실제 귀속분)이 51%, 26%(=51%×51%), 13%, 7%에 불과하더라도 완전한 지배를 할 수 있음

[그림 II-2] 지주회사의 가상사례



자료: 저자 작성

-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수직계열화 등의 지주회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지분비율, 증손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지주회사의 정의에서 설립·합병·분할의 경우 등기일 현재 또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회사는 전기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회사로 자회사 주식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정의함⁶⁾
 - 2017년 7월 자산총액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7년 6월까지 유예를 두고 있음⁷⁾
- 이러한 지주회사의 무분별한 확장과 안정성을 위해 부채비율 등의 행위제한 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정을 두고 있음⁸⁾

-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행위를 하지 못함
- 자회사 지분율을 40%(상장법인 등에 대해서는 20%) 미만으로 소유하지 못함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금지

□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설립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기업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보다 경영성과, 기업가치 측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⁹⁾
-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은 유사 통제기업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이 낮게 나타나 이익조정수준이 감소됨¹⁰⁾
 - 다만, 지주회사 전환과 소유구조형태의 교차변수만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쳐 지배구조 개선만이 효과는 아닐 수 있음
- 지주회사 전환으로의 공시는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반응(비기대수익률의 증가)을 나타내어 주주가치를 증진함¹¹⁾
- 지주회사로 전환은 비선형관계 형태로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¹²⁾
 - 비선형관계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성과와 가치 감소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

□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자체가 지배구조 개선이나 부채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음

-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기업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보다 지배구조지수가 높지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9) 정도진(2008)

10) 신호영·박화윤(2008)

11) 백재승·박종하(2010)

12) 곽수환·최석봉(2008)

않아 전환 자체가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음¹³⁾

- 지주회사 전환공시는 신용등급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채권자의 가치나 부채조달비용에 영향이 없음¹⁴⁾

□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주회사 체계 장점의 불확실성과 전환비용을 들 수 있으며, 과세특례는 전환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주회사의 장점은 실증적으로 분석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지주회사의 행위규제 등으로 인해 지배주주의 전환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전환비용은 주주총회 의결 등의 전환절차와 매수청구권, 양도차익에 따른 조세 등의 금전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특법」상 과세특례는 이러한 전환비용을 감소시켜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음

나) 현물출자

□ 현물출자란 일반적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을 회사에 자본으로 급여하는 것을 의미함

- 「회사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강학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금전 이외의 재산의 출자를 현물출자로 보고 있음
 - 이는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현물출자는 주식 처분 후 신규 주식 취득과 동일한 거래이므로 과세되고 있으나 연속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있음

- 출자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존 주식을 처분 후 신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나 신규 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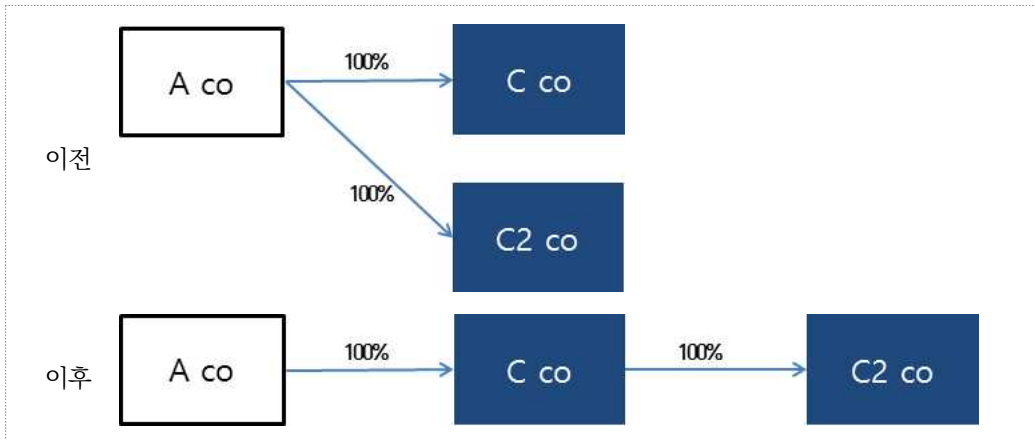
13) 정도진(2008)

14) 백재승·박종하(2010)

세되고 있음

- 반면에 현물출자자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그 경제적 실질의 변동이 거의 없음
 - 아래 [그림 II-3]에서 A co의 C2 co에 대한 경제적 실질은 직접 지배하는 것과 C co를 통해 지배하는 것의 차이가 없음¹⁵⁾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후술될 「법인세법」상 과세이연은 80%의 지분율 등을 소유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이연됨

[그림 II-3] 주식현물출자의 이후 지분



자료: 저자 작성

- 지주회사나 외국자회사 현물출자의 특례는 이러한 지배력과는 무관하게 과세를 이연하므로 경제적 실질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특례의 성격을 가짐
 - 현물출자받은 법인에 대한 지분율 규정은 없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나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존재하지만 지분율이 「공정거래법」에 따르거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분율보다 현저히 낮음

15) 다만, C co와 C2 co간의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 형제회사로 존재하는 것과 모회사로 존재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조특법」상 과세특례는 현물출자 시 경제적 실질의 변동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지주회사나 외국자회사에 대한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2) 사업구조조정

- 우리나라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와 사전적으로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을 신속·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 또는 파산에 대응하여 「채무자회생법」(또는 “통합도산법”)을 두고 있음
 -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 사후적 사업구조조정의 형태의 하나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법적 절차 등에 따른 문제점을 대응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 자율협약은 사적 협약이지만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 요건 효력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방법임¹⁶⁾
 - 실무상으로는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져 완전한 형태의 재량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사전적 사업구조조정제도로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 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운용함¹⁷⁾

16) 이상은·고영희(2017), pp.132-133.

17)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기업활력법이란」, <http://www.oneshot.or.kr/sub/law/summary.asp>, 검색일자: 2018. 6. 20.

〈표 11-2〉 사업구조조정 제도 구분

구분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적용대상	공급과잉분야 기업 (기축법·통합도산법 대상 기업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신용등급	A·B	C	D
특징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절차 효율화·세제 지원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워크아웃) (금융지원(채무조정) 한정)	법원 주도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법정관리)
한계점	공급과잉분야에 한정	채권금융기관에 500억원 이상 신용공여받은 경우에 한정 채권금융기관 적용 범위 또한 한정적(해외금융기관 등 제외)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자료: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입법배경」, <http://www.oneshot.or.kr/sub/law/summary.asp>, 검색
일자: 2018. 6. 20.

- 이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활력법」은 법률 자체가 한시법이며, 이는 기존 「회사법」 등의 체계에 대한 특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입법된 이래 한시법의 성격으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제정과 연장을 통해 운용되고 있음
 - 현행 법률 제14075호는 부칙을 통해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⁸⁾
 - 「기업활력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 시행이 2017년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적용됨
- 이러한 선제적 또는 사후적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특법」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조특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과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

2. 현물출자 및 사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과세특례

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제도 및 특례

- 현물출자는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어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고 있음
 - 현물출자는 법률상 자산의 형식적 소유자가 주주에서 회사로 변경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득을 구성하고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현물출자 과세에 대한 비판도 있음¹⁹⁾
 - 예를 들어,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거나 도관으로 보는 공동사업 또는 동업 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단체에 대한 주주 또는 구성원 자신의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경제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임

1)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²⁰⁾

- 「법인세법」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국법인인 주주는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한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요건은 사업의 계속기간·사업의 지속성·지분 요건 등이 있음
 - 사업의 계속기간이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것임
 - 사업의 지속성이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말까지 현물출자 자산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임

19) 이창희(2017), p.164.

20) 「법인세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

- 지분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말까지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임
 - 공동현물출자자를 포함하나 공동출자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 이연된 소득은 출자법인의 주식 처분, 피출자법인의 사업 중단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익금으로 인식되어 과세됨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감가상각자산·토지·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주식의 비율과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중 처분한 양도차익의 비율을, 더한 비율에서 곱한 비율을 차감한 비율만큼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함
 - 피출자법인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에 따른 출자법인의 주식 처분 또는 피출자법인의 사업 폐지는 예외로 함
 -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출자법인 등이 피출자법인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거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자산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폐지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함
 - 적격합병·분할 또는 파산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함

2)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²¹⁾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는 2018년 말까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또는 현물출자·분할로 전환된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내국법인 내국인 주주가 2018년 말까지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주회사 또는 기존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함

2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 내국법인 내국인 주주가 2018년 말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함

-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지분유지·사업의 계속성이 있으며, 전환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대해서는 지분미달요건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부가됨
 - 지분유지는 지배주주 등이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보유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계속성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하는 것임
 - 지분유지가 요구되는 지배주주 등에는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지분율 1% 미만이면서 시가 10억원 미만의 소액주주 등을 제외함
 - 전환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는 지분미달요건, 지주회사 설립 후 경과연도, 교환권리부여 및 이를 공시하는 추가적인 요건이 부여됨
 - 지분미달요건은 현물출자 대상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비율(40%, 상장법인 등의 경우 20%) 미만이면서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거나 전환지주회사 분할 등으로 존속되는 법인임을 의미함
 - 경과연도는 전환지주회사 설립 후 2년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환권리부여는 모든 지분미달자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하는 권리가 부여되며 이 사실이 공시되는 것임

- 지주회사는 현물출자 등이 과세이연되는 경우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여 역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차액을 익금으로 과세됨
 - 주주 외에 지주회사도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발행주식 등의 차이가 익금으로 과세되나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자산조정계정을 통해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어 과세가 이연될 수 있음
 - 다만, 현물출자 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 말 이후 2년 이내에 지주회사에 해당하

지 않거나, 2년 이내에 자회사 지분이 위의 「공정거래법」상 지분율(40% 또는 20%)에 미달하는 경우, 자회사의 사업폐지, 지주회사 또는 현물출자 등을 한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의 날을 기준으로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 - 2년 이내에 자회사 지분이 「공정거래법」상 지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됨

- 원칙적으로 주식의 처분 또는 자회사의 사업폐지 시는 주주 및 지주회사에 과세가 되나 예외가 존재함
 - 금융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이연받은 주주가 이 주식을 다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 적격합병·분할 또는 파산 등의 경우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한편, 개인 등의 주주인 경우 법인주주와 유사하나 시행령에 따른 이연된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예외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 주주의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인정 등 과세이연 자체는 법인인 주주인 경우와 유사함

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²²⁾

- 내국법인이 2018년 말까지 요건을 갖추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일을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이연
 - 요건은 현물출자를 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과세는 양도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부터 36개월간 균등하게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루어짐

2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5.

- 이연된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되기 전에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폐업·해산하면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 다만, 현물출자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 승계나 과세이연 대상 현물출자 후 1개월 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함

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는 재무구조개선계획과 사업재편계획(이하 합쳐서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채무상환, 채무인수 등에 대해서는 두 계획에 모두 동일한 특례가 존재함
 -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제34조 및 제121조의26)
 - 채무의 인수(제39조 및 제121조의27)
 - 주주 등의 자산양도(제40조 및 제121조의28)
 - 채무면제익(제44조 및 제121조의29)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 및 제121조의30)²³⁾
 - 합병 중복자산의 양도(제121조의31),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제121조의32)은 사업재편계획에만 존재함
 - 제약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2018년까지 합병 중복자산 양도 특례(제47조의4)가 존재하나 재무구조개선계획과는 무관함
-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재무구조개선계획과 사업재편계획의 요건은 대부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이행약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적기시정조치, 「채무사회생법」상의 회생계획, 「자산관리공사법」상의 약정임

23) 다만,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교환은 2017년 말로 일몰되었음.

- 다만, 법률로 정하여지지 않은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 의한 특별약정(자율협약)도 포함됨²⁴⁾

○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른 계획을 의미함²⁵⁾

1)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²⁶⁾

□ 내국법인이 채무구조개선계획이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함

○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이후 4개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과세함

○ 채무는 금융채권자의 차입금과 그 이자,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회사채·기업어음이 해당됨

□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상당액은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됨

○ 사유는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자산양도 후 3년 이내에 기준부채비율보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해당 사업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등이 승계하지 않고 폐업·해산한 경우임

- 기준부채비율이란 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사업연도 시점 또는 계획승인 이전 계획수립을 위한 평가한 계획승인권자의 승인된 재무제표기준의 부채비율에 채무상환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차감한 것임

○ 이 경우 익금산입과 더불어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26)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21조의26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16조의30.

- 익금산입금액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 만큼이며, 폐업 등의 경우에는 잔액을 모두 익금에 산입함

2) 채무 인수·변제 과세이연²⁷⁾

- 법민주주가 요건을 충족시켜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과세이연함
 - 출자지분의 양도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해야 하며,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것에 한함
 - 위 계획 이외에 법인청산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년 말까지 청산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 채무가 소멸된 해당 법인은 채무 감소로 인한 익금을 결손금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해당 채무감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형태로 과세이연함
 - 주식양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의 실사 후 확인을 통해 수정 회계처리가 되는 경우 익금산입 시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예외를 두고 있음
 - 주주가 채무 인수·변제로 인해 다른 주주에게 분여하는 이익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음²⁸⁾
-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상당액은 기준부채비율 등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됨
 - 사유는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자산양도 후 3년 이내에 기준부채

27)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21조의27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16조의31.

28)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6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각 호가 삭제되어 개정이 필요함.

비율보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해당 사업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등이 승계하지 않고 폐업·해산한 경우임

- 익금산입금액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 만큼이며, 폐업 등의 경우에는 잔액을 모두 익금에 산입함
 - 이 경우 익금산입과 더불어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

3)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과세이연²⁹⁾

-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시켜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 또는 자산매각 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법인은 증여가액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주주는 증여한 자산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매각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요건은 계획에 따라 자산의 증여 및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며, 금전인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외의 자산은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채권자의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함
 - 해당 법인은 수증한 자산가액을 결손금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해당 수증일 이후 3개 사업연도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형태로 과세이연함
 - 증여한 법인주주는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거주자를 포함한) 주주는 자산 양도 후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과세하지 않음
- 이외에 거래의 형태(일시증여)·사후관리·「상증세법」상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 등의 내용은 위 채무 인수·변제와 동일함

29)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21조의27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16조의32.

4)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³⁰⁾

- 계획이 적용되는 내국법인이 2018년까지 금융채권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해당 법인은 채무면제익의 과세가 이연되고 금융채권자는 면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 계획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등의 약정과 자율협약은 포함되나 「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약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무의 일부 면제를 포함함
 - 해당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결손금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면제일 이후 3개 사업연도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형태로 과세이연함
 - 금융채권자는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 「구조조정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손금을 산입할 수 있는 금융채권자에서 제외됨

- 해당 법인이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 재무구조개선계획하에서는 이연된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다른 사유나 예외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가산에 대한 내용도 없음
 - 반면에 사업재편계획하에서는 계획에 따른 합병·분할에 따른 사업 승계의 예외사유가 있으며 사유로 인한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됨

30)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21조의29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16조의33.

5)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³¹⁾

- 내국법인의 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교환양수법인”)의 주식 등과 소유비율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수한 주식 등의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함
 - 양수하는 주식 등은 교환양수법인의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을 양수하거나 교환양수법인의 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교환양수법인의 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 주식 양수 시에는 해당 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함
 -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의 실사 후 확인을 통해 수정 회계처리가 되는 경우 익금산입 시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예외를 두고 있음
 -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인해 과세이연이 된 상황에서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과세이연금액을 포함하여 과세이연됨

- 일정기간 내에 대상법인의 이전 기업집단이 다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하거나 주주 등이 대상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게 되면 이연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짐
 - 주식교환 이후 5년 이내에 대상법인의 이전 기업집단에 대상법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거나 주주 등이 다시 대상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짐
 - 이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가산됨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은 2017년까지로 일몰되었으나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은 2018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요건으로 함

3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1조의30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16조의34.

- 따라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은 더 이상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후관리만 적용되고 있음

6) 사업재편계획에만 존재하는 과세특례 - 중복자산 양도³²⁾, 적격합병에 대한 주식교부비율³³⁾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18년 말까지 동일 업종 간 합병하여 중복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1년 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함
 - 양도차익은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함
 - 해당 법인은 양도일 이후 3개 사업연도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형태로 과세이연함

- 해당 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 3년 내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 또한 이자상당액이 가산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동일하게 2018년 말까지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재무구조개선계획과는 무관하게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함³⁴⁾
 - 제약·의료·건설·해상운송·선박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업종에 적용되는 것으로 요건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을 위한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요건에서 대가의 주식비율을 80%에서 70%로 낮춤

3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및 제116조의35.

3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3. 쟁점

가. 일몰연장 여부 또는 상시화

-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현물출자와 사업구조조정 과세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이의 연장 여부 또는 필요하다면 상시세제로의 전환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현물출자제도와 사업구조조정 과세특례는 일몰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오고 있음
 - 일부 규정의 경우 중단된 기간이 존재하지만 이후 다시 입법됨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018년 말 일몰을 다시 연장해야 되는 사유가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제도의 유지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체계에서 일몰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과 「법인세법」 등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 없는 상시 과세특례로 개정하는 방법이 있음

 - 제도의 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이론적 측면에서 제도가 합리적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이란 과세특례가 사회적인 편익/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임
 - 제도의 합리성이란 제도의 설계가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임
- 1) 제도의 실효성**
-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과세특례가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현물출자 및 사업구

조조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편익/비용 관점에서 지주회사 등의 소유구조 개선과 사업구조조정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판단해야 하나 이러한 제도는 다른 법령에서 이미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조세 측면에서의 판단은 고려하지 않음
 - 이러한 체계가 양(+)의 사회적 효용이 없다면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조세가 아닌 「공정거래법」이나 사업구조조정 관련 법률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임
 - 그렇다면 과세특례가 소유구조 개선이나 사업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나 이러한 분석은 가정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과제로 남겨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됨³⁵⁾
- 실효성 판단을 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본다면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지주회사의 수는 2003년을 기준으로 일부 집단 분류에서 일부 감소기간이 있었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³⁶⁾
-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총지주회사의 수는 193개로 전년 162개사 대비 31개사(19%) 증가함
 -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수 및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수도 증가함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대부분 금융사가 속해 있거나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5) 관련 근거는 제IV장을 참고할 것

36)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2017. 11, pp. 1~29.

〈표 II-3〉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단위: 개)

구분	'03.7.	'04.5.	'05.8.	'06.8.	'07.8.	'08.9.	'09.9.	'10.9.	'11.9.	'12.9.	'13.9.	'14.9.	'15.9.	'16.9.	'17.9.
일반지주회사	15	19	22	27	36	55	70	84	92	103	114	117	130	152	183
대기업집단	4	6	10	12	15	13	16	22	26	28	30	30	29	19	39
금융지주회사	4	5	3	4	4	5	9	12	13	12	13	15	10	10	10
대기업집단	1	2	0	0	0	0	2	3	2	2	2	1	1	1	2
합계	19	24	25	31	40	60	79	96	105	115	127	132	140	162	193
대기업집단	5	8	10	12	15	13	18	25	28	30	32	31	30	20	41

주: 대기업집단은 2016년 9월은 10조원 이상 규모를 대상으로 한 숫자이며, 2017년 9월은 5조원 이상 규모를 대상으로 한 숫자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2017. 11, p. 4.

- 사업구조조정은 재무구조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지만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정기평가를 근거해보면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기 신용위험 평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고 해서 강제적 자율협약·워크아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해당될 수밖에 없음
 - 구조조정대상 기업들에 대해 워크아웃 등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채권은행에 신규여신 중단, 만기여신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³⁷⁾
 - 구조조정대상 기업(신용평가 결과 C 또는 D)의 수는 2017년 중소기업의 경우 174곳, 대기업의 경우 25곳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 과세특례가 해당될 수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존재하고 있음

3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도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2017.12.6. p. 3.

〈표 II-4〉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 추이

(단위: 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기업	36	40	34	54	32	25
C등급	15	27	11	27	13	13
D등급	21	13	23	27	19	12
중소기업	97	112	125	175	176	174
C등급	45	54	54	70	71	61
D등급	52	58	71	105	105	113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과 2015년 정기 및 수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재구성함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도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총 76건이 이루어져 과세특례의 대상 기업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³⁸⁾
 - 2016년 8월에 특별법이 시행되어 2016년 9월에 1호 승인기업이 이루어진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법률이므로 1.5년 사이에 총 76건은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됨

- 과세특례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자료는 조세지출금액인데 이 금액은 대상 기업 숫자에 비해 크지 않음
 - 과세이연에 대한 조세지출은 간접감면으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조세지출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³⁹⁾
 - 2019년부터 2016년까지의 실적자료를 보면 지주회사, 외국자회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으나 이자상당액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음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채무면제익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는 소액 발생하였으나 (2012년도 1,200만원) 이후 조세지출금액이 없음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조세지출은 2016년 입법으로 인해 아직까지 발생금액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추정액도 0으로 되어 있음

3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85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보고, 2018. 4.

39)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9, p. 5.

〈표 II -5〉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금액

(단위: 억원)

구분	세제(조세특례제한법)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현물출자	제38조의2 현물출자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 등	법 256	213	188	149	29	-	-	-	-	-
	제38조의3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	소 8	32	64	91	211	174	107	41	131	158
		법 0.3	0.3	-	0.14	0.1	0.04	-	2	2	3
		소 -	-	-	-	-	-	-	-	-	-
채무구조 개선	제34조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법 -	-	-	-	-	-	-	-	-	-
	제39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소 -	-	-	0.18	-	-	-	-	-	-
		법 -	-	-	-	-	-	-	-	-	-
		소 -	-	-	-	-	-	-	-	-	-
사업재편 계획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	법 -	-	-	-	-	-	-	-	-	-
	제44조 기업의 채무면제	소 12	34	23	10	2	2	10.58	41.75	0.02	-
		법 3	4	1	0.12	-	-	-	-	-	-
		소 -	-	-	-	-	-	-	-	-	-
		법 -	-	-	-	-	-	-	-	-	-
		소 -	-	-	-	-	-	-	-	-	-
사업재편 계획	제121조의26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법 -	-	-	-	-	-	-	-	-	-
	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소 -	-	-	-	-	-	-	-	-	-
		법 -	-	-	-	-	-	-	-	-	-
		소 -	-	-	-	-	-	-	-	-	-
사업재편 계획	제121조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	법 -	-	-	-	-	-	-	-	-	-
	제121조의29 기업의 채무면제	소 -	-	-	-	-	-	-	-	-	-
		법 -	-	-	-	-	-	-	-	-	-
		소 -	-	-	-	-	-	-	-	-	-
사업재편 계획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	법 -	-	-	-	-	-	-	-	-	-
	제121조의31 합병에 따른 증복지산의 양도	소 -	-	-	-	-	-	-	-	-	-
		법 -	-	-	-	-	-	-	-	-	-
		소 -	-	-	-	-	-	-	-	-	-
사업재편 계획	제121조의32 합병 시 주식교부비용 특례	법 -	-	-	-	-	-	-	-	-	-
		소 -	-	-	-	-	-	-	-	-	-

주: 1. 2017년과 2018년은 추정치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4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운영기간 중 일몰로 적용되지 않은 구간이 존재함.
자료: 매년도 대한민국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재구성함

2) 혜택의 귀속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

-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현물출자와 사업구조조정의 조세특례는 그 원인행위에 있어 다른 조세특례와는 차별성이 존재함
 - 조세특례는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구조 개선과 사업구조조정은 특정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만 적용됨
 -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행위·연구개발행위 등은 모든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지주회사 설립, 계획에 귀속되는 신청에 대한 세제혜택은 특정 대상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소유구조가 불완전하거나 사업상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기업 등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음

- 소유구조 개선 세제는 계속적으로 소유구조를 지주회사 등으로 편성하고 있는 법인과 비교할 때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함
 -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확장 등에 직면하였을 때 오히려 소유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 따라서 이러한 과세특례의 이용은 계속적으로 소유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만 적용받게 됨

- 더구나 지주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7월부터 지주회사 요건 중 지주회사의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에서⁴⁰⁾ 5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들은 과세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음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상 곤경에 처한 기업 또는 이의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론상으로는 기업이 자력으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계획의 적용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 또한 채권금융단이 채권상환을 보다 용이하기 하기 위해 회사를 계획의 적용을 받도록 유도하는 도덕적 해이도 가능함
 - 채권금융단의 경우 채권상환을 요건으로 하는 금융채무상환, 부채비율로 사후 관리를 하는 금융채무상환, 주주 자산양도, 채무인수·변제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채권회수가 용이해질 수 있음

나. 과세제도의 정비

- 만약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운용상의 측면에서 정비를 고려해야 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1) 공통

- 먼저 각 제도의 과세혜택이 과세이연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과세이연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주회사 현물출자 등은 처분 시까지,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는 4년 이연 이후 3년간 과세임
 - 계획에 따른 과세특례는 대부분 4년 이연 이후 3년간 과세이며, 채무인수변제 및 자산양도의 법인주주는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
 - 주주 등의 자산양도는 비과세이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는 3년 이연 이후 3년간 과세임
- 이러한 과세특례 내용은 일몰연장 또는 상시화와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회사의

추후 청산 시 조세채권확보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함

- 일몰연장 또는 상시화가 제안된다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과세특례와는 차별적 일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과세이연의 경우 법인이 추후 파산이 과세이연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세채권의 우선 순위와 비교하여 후순위가 되므로 조세채권 확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과세특례 대상 주식과 동일한 주식 보유 시 일부 주식을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의문시될 수 있음
- 지주회사 설립, 외국자회사 및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 과세특례의 엄격한 적용 및 사후관리 시 과세이연의 조기 종료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적용도 가능할 것이나,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음

2) 소유구조 개선

-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규정에서 자회사 사업폐지와 지주회사가 출자받은 주식 처분 시의 사후관리요건, 지주회사의 취득가액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음
- 지주회사 과세특례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현물출자(또는 주식교환)일 이후 2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전액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자회사가 현물출자일 이후 2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의 시가와의 차액 중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자산 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현물출자 구조에서 본다면 현물출자 등을 한 주주나 출자받은 지주회사

가 여전히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유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음

- 여기서 자회사가 사업의 폐지가 일부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전제이며, 전부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인 경우에는 이견이 없음
 - 전부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분을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임

- 지주회사 또는 외국법인이 현물출자 등을 통해 받은 자회사 주식 처분 시 현물출자한 주주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음
 - 지주회사 등이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주주는 간접적인 매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 현물출자한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는 과세이연에 불과한데, 지주회사는 자산조정계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 현물출자를 통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림 II-4]에서 A co가 H co에게 장부가액 100(시가 120)인 C co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2년 내에 H co 주식을 시가 200에 처분하였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 시에는 총과세대상금액은 120이 되나 과세특례 미적용 시에는 100임
 - 과세이연을 고려하지 않으면 과세특례 미적용할 경우 총과세대상소득이 낮아지는데 이는 현물출자 시 지주회사에게 자산조정계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취득하도록 하기 때문임
 - 사실상 H co는 120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이 이루어졌으나 과세특례 적용 시 장부가액은 100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20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

[그림 II-4]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이중과세

구분	소유구조 및 거래내역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금액		과세특례미 적용시 과세금액	
		A co	H co	A co	H co
이전	<p>A co H co</p> <p>↓ 장부가액: 100</p> <p>S co</p>				
현물출자	<p>순장부가액: 100 현물출자당시시가: 120</p> <p>A co → H co</p> <p>↓ 순장부가액: 100</p> <p>S co</p>	-	-	과세 20 (=120-100)	-
주주의 지주회사 주식매각	<p>H 주식매각: 200</p> <p>A co H co</p> <p>↓ 순장부가액: 100</p> <p>S co</p>	과세 100 (=200-100)	과세 20 (=120-100)	과세 80 (=200-120)	-
		합산한 총과세금액: 120		합산한 총과세금액: 100	

자료: 저자 작성

3) 사업구조조정

- 조세특례로 규정된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과 달리 규정되고 있는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은 「조특법」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4년 이연 이후 3년 과세의 형식으로 일몰을 정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의 상시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결손금 보전 시까지 이월됨
 - 「법인세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산입하나 계획 등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결손금 발생 시까지 이월할 수 있음⁴¹⁾
 -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와 일반적인 채무면제는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과세특례요건 중에 채무상환을 전제로 지원되는 세제는 기업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채무자를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목적에 따른 세제 정비가 필요할 수 있음
 - 자산매각, 주주 자산양도는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채무 인수·변제 등은 부채비율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사실상 법인의 채권자에게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로 보여질 수도 있음
 - 사업구조조정 과세특례가 대상 기업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여러 측면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워크아웃 등에서 채권단의 채무면제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음
 - 반면에 기업 정상화 등의 측면에서 채무상환이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채무변제나 부채비율은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지 세제로써 이에 개입할 필요는 없음

4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제5항

- 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비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지 않아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사업구조조정의 제약이 될 수 있음
 - 주주가 채무 인수·변제, 주주의 자산양도를 통한 대상법인 지원 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부여되는바, 「조특법」에서는 이 경우 비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계획에 따라 주주가 해당 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증여를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사업구조조정 기업의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다. 쟁점 요약

- 나. 절에서 살펴본 쟁점은 크게 일몰연장 여부와 과세제도의 정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요약해 보면 <표 II -6>과 같음

〈표 II -6〉 소유구조 개선과 사업구조조정 세제의 쟁점

쟁점	대상세제	내용	고려사항 등
일몰연장 여부	공통	일몰 연장 여부 또는 제도의 상시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 혜택의 귀속자(형평성) •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
과세제도의 정비	공통	조세혜택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과세이연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일몰연장인지 상시화와 연계) • 조세채권의 확보
		일부 주식의 처분시 물량흐름의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의 엄격한 적용 • 경제적 실질
	소유구조	자회사 사업폐지 시 과세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나 지주회사 측면에서는 변동 없음(특히, 자회사 해산이 아닌 사업전환 등에 따른 사업폐지 시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주식의 실질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	대상세제	내용	고려사항 등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처분시 주주 과세근거 부존재	• 사실상 처분인데 현재 규정이 없어 과세근거 없음
		지주회사 이중과세	• 자산조정계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인식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구조 조정	법인세법상 출자전환 채무면제	•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음에도 일몰이 없고 과세이연도 보다 완화된 형태임
		채무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에서 채권자에 대한 지원이 요건으로 적정한지 여부 • 채권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조 세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주주의 지원시 다른 주주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 계획하에서 주주 지원이 다른 특수관계인인 주 주에 대한 지원일 가능성 여부

자료: 저자가 정리·작성함

Ⅲ. 주요국의 과세제도 운영현황

1. 미국

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제도

1) 출자자에 의해 통제되는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 출자자(transferor)에 의해 출자 후 통제되는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시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⁴²⁾
 - 통제란 회사의 종류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의 80%와 모든 주식수의 80%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⁴³⁾
 - 현물출자의 대가는 주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의 현금 등의 자산이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수취한 현금과 자산의 공정가치를 한도로 이익을 인식하며 손실은 인식되지 않음

- 현물출자받은 회사는 출자받은 자산에 대해 제공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동일한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⁴⁴⁾
 - 다만, 주식 이외의 자산이 제공되는 경우 현금액 및 자산의 공정가치 등만큼의 감소가 이루어짐

42) U.S. Code §351.

43) U.S. Code §368(c).

44) U.S. Code §358.

2) 재편성(reorganization)에 따른 현물출자

- 기본적으로 재편성 계획에 따라 주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주나 대상법인은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⁴⁵⁾
 - 주식으로만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금이나 여타 자산의 교환이 이루어지면 해당 부분만큼의 손익이 인식됨
 - 재편성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나 “재편성 계획”에 대한 별다른 정의가 없어⁴⁶⁾ 이는 특정 법령(Title 11) 등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재편성 계획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예외적으로 일부 규정에서는 법원의 승인 등의 요구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 재편성은 7가지로 구분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이 중 주식교환(주식현물출자)이 포함되어 있음⁴⁷⁾
 - 법적 합병 또는 연결부터 파산법(title 11)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따라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까지 기술되어 있음
 - (A) 법적 인수 및 연결
 - (B) 주식교환에 의한 취득
 - (C) 자산인수에 의한 취득
 - (D) 자산매각(분할)
 - (E) 자본재구조화(recapitalization)
 - (F) 실제·형식·조직의 장소의 변경
 - (G) 파산법 등에 따른 재편성
 - 이를 구분하여 취득(acquisitive), 분할(divisive), 기업구조조정(corporate

45) U.S. Code §354 & §361.

46) Treasury Regulation §1.368-2(g).

47) U.S. Code §368.

restructuring), 파산(bankruptcy) 재편성으로 구분하기도 함

- IRC §368(a)(1)에서 (A)~(D)까지를 취득, (D)의 일부 형태를 분할, (E)와 (F)를 구조조정, (G)를 파산으로 분류함

- 이 중 주식현물출자와 관련해서는 (B)형을 통해 재편성에 포섭되고 있음
 - 이 중 주식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기존 보유한 회사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의 주식(acquiring corporation)과 교환(삼각주식교환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취득회사가 교환 이후 기존의 회사를 통제하는 것이 재편성에 포함되어 있음(B형 재편성)
 - 통제의 개념은 상기에 기술한 정의와 동일하므로 80%의 의결권 및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 다른 재편성과는 달리 주식교환은 소액이라도 현금 또는 여타 자산이 사용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임⁴⁸⁾
 - 또한 모든 재편성에서 주주의 수취한 주식의 명목가액이 교환으로 제공한 주식의 명목가액을 초과하거나 교환으로 제공한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됨⁴⁹⁾

- 여타 사업 및 지분의 지속성 요건은 재무부 규정에 의해 A~D형 재편성에 적용되고 있음
 - B형 재편성에서 IRC에는 지분율과 주식으로의 교환 요건만 규정되어 있으나, 재무부 규정을 통해 사업기업의 지속성(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과 지분의 지속성(continuity of interest)을 요구하고 있음⁵⁰⁾
 - 사업기업의 지속성은 새로이 모회사가 된 회사(acquiring corporation)가 취득한(주식을 통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48) Peterson sullivan LLP, 「Time for a Change: Tax-Free Reorganizations」, 2016. 12, <https://www.pscpa.com/time-for-a-change-tax-free-reorganizations/>, 검색일자: 2018. 6. 20.

49) U.S. Code §354(2)(A).

50) Treasury Regulation §1.368-1.

- 지분의 지속성이란 주주는 교환의 대가로 취득한 회사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함을 의미함
- 특정 기간이나 보유 비율 등의 요건을 설정하지는 않으며 진실한(bona fide) 거래를 충족할 경우에 대한 기술과 사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 외국법인이 대상인 경우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⁵¹⁾
 - 원칙적으로 외국재편성에서 미국인이 자산을 외국회사에 이전 시에 과세되지만 재편성의 교환대상 또는 당사자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나. 사업구조조정 과세제도

- 미국에서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세제는 채무와 관련된 이익과 특정 자산 양도에 대한 비과세만 확인되며, 이외에 사업적·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세제는 확인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채무의 면제(debt cancellation)는 채무자의 소득에 가산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파산법(Bankruptcy Code)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⁵²⁾
 - 채무면제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적격농업채무 및 적격부동산사업채무와 더불어 파산법에 따른 파산사건에서 발생, 채무자의 파산(insolvent)이 이루어진 부분 중 지급이 불가능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파산법과 파산에 따른 지급 불이행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파산법에 따른 요건을 먼저 적용함

51) U.S. Code §367(A)(2) ; IRS, 「4.61.11 Transfers of Property by and to Foreign Corporations」, https://www.irs.gov/irm/part4/irm_04-061-011, 검색일자: 2018. 6. 20.

52)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2), p. 25.

- 다만, 파산법에 의한 채무면제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의 관할에 속해 있으면서 채무면제가 법원에 의해 승인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 파산법이란 미국 파산법(Title 11-Bankruptcy)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법률에 속하는 법인은 채무면제를 비과세할 수 있음
 - 미국 파산법은 파산 및 이에 따른 청산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회생·화의 등을 포함한 광의의 파산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 미국 파산법인 Title 11은 제7장 청산(liquidation)뿐만 아니라 제11장 재편성(reorganization)도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음

- 파산사건 또는 파산에서의 채무면제가 총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세액속성에서는 차감(reduction of tax attributes)됨⁵³⁾
 - 파산사건 등의 채무면제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결손금 등의 세액속성에 대한 차감이 이루어져 완전한 형태의 비과세는 아님
 - 이러한 형태를 통해 완전 비과세가 아닌 일부 과세이연의 효과를 유도하여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함
 - 세액속성은 결손금, 통상적인 영업상 세액공제 이월액, 최저한세에 따른 최소세액공제(minimum tax credit), 자본손실, 자산의 세무상 유보액, 수동적 손실과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해당됨

- 채무면제와 유사하게 파산절차 등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이익은 비과세함⁵⁴⁾
 -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상환 시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전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불능 부분에 대해서는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53) *ibid.*

54)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2), p. 26.

- 다만, 마찬가지로 세액속성에서는 차감됨

- 자산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G)형 재편성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분할을 위한 자산이전에 적용되는데 이는 형식적 분할 없이 회사의 사업을 구분하는 데 사용됨
 - (G)형 재편성은 Title 11이나 유사한 사례에 따라 자산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비과세거래로 간주함⁵⁵⁾
 - 비과세를 위해서는 자산을 취득한 회사의 주식이 요건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데, 이는 부실회사의 모든 자산 또는 능동적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이 취득회사에 이전되었음을 확실히 하는 것임⁵⁶⁾
 - 자산을 취득한 회사의 주식이 처분한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이전한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배당해야함⁵⁷⁾

2. 영국

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제도⁵⁸⁾

- 주식교환(share exchange)과 기업재구조화(company reconstructions)에서 주주나 법인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처분 시까지 과세하지 않음
 - 이는 새로 취득한 주식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개념에서 과세이연이 이루어지는 것임

55) U.S. Code §368(a)(1)(G).

56) Christopher Woll(2006), p. 288.

57) U.S. Code §354~356.

58) UK Government, 「Company reconstructions: introduc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52500>, 검색일자: 2018. 6. 10.

- 영국에서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 자기주식의 처분이나 신주 발행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어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이 다르게 처리되지 않음

- 이를 위한 요건으로 보통주 비율, 통제를 위한 공개매수, 의결권의 상당부분 보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과세가 이연됨
 - 첫 번째 요건은 주식교환으로 인해 취득회사가 목표회사의 보통주 25%를 보유하고 있거나 교환의 결과로 보유하는 것임
 - 이러한 보통주 지분 소유는 직접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완전자회사 등을 통한 지분 소유에는 적용되지 않음
 - 두 번째 요건은 목표회사의 주주에게 목표회사에 대한 통제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매수 형태의 일반제안(general offer)을 하는 것임
 - 통제는 통상적으로 50% 수준을 의미하며⁵⁹⁾, 매수가 실패하더라도 과세이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 번째 요건은 목표회사의 의결권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거나 교환의 결과로 보유하는 것임
 - 이는 EU법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과세이연을 위해서 주주의 취득가액은 기존 장부가액으로, 취득회사의 취득가액은 통상적으로 시가로 인식됨
 - 주주는 주식 교환이 처분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위치의 변동이 없음
 - 취득법인은 일반적인 자본소득원칙이 적용되어 시장가치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교환 시 취득한 목표법인의 주식가치가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제공한 대가로 인식되는데 일반적으로 약정상 대가가 이에 해당함
 - 시장가치규정은 자산교환 시 독립된 당사자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환 시 시장가치로 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것임⁶⁰⁾

59)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sec. 9」, Country Analyses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collections/cta/html/cta_uk_s_009.html&WT.z-nav=outline&colid=4916&hash=cta_uk_s_9. 검색일자: 2018. 6. 14.

- 지분에 대한 요건 이외에 주식 또는 목표회사의 사업 연속성 또는 보유기간 요건이 없으나, 엄격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되어 과세이연이 부인될 수 있음
 -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거래가 진실된(bona fide) 상업상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조세회피전략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자본이득세그룹(Capital Gains Technical Group)에서 판단하고 있음
 - 다만, 개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합계가 취득회사 주식의 5% 미만인 경우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사전확인(advance clearance)을 받을 수 있는데 강제적인 절차는 아니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임

-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 법률⁶¹⁾과 HRMC지침 모두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거주자 요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다른 형태의 재구조화인 과세대상 자산 양도의 경우⁶²⁾(s.139) 회사가 거주자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주식교환은 거주자 요건이 없어 외국법인의 주식교환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유추됨
 - 현물출자 등에서 영국 거주자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외국과 내국을 구분하는 규정은 없음⁶³⁾

60) UK Government, 「HMRC internal manual Capital Gains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3090>, 검색일자: 2018. 6. 10.

61)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s.135.

62)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s.139.

63) IBFD, 「United Kingdom - Holding Companies - 1. Introduction」, 2017. 6, https://online.ibfd.org/collections/hold/html/hold_uk_s_001.html#hold_uk_s_1, 검색일자: 2018. 6. 20.

나. 사업구조조정 과세제도⁶⁴⁾

- 영국에서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세제는 채무와 관련된 이익에 대한 비과세만 확인되며, 이외에 사업적·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세제는 확인되지 않음
- 영국은 일반적인 자금차입 등에 대한 세무상 대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대출관계(loan relationships)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채무면제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 대출관계는 매매목적의 자금거래 이외의 것에 대한 규정으로 기본적으로 기업회계를 기반으로 하며 일부 세무목적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음
 - 채무면제 시 비과세는 특수관계인(connected parties)과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의 대출에 대해 일부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당사자의 차입에 대해 채무면제에 대해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등이 요구됨⁶⁵⁾
 - 면제되는 대출이 회사의 대출관계하에서 상환되는 부채이며 이러한 관계에서 상각 후원가 기준(amortised cost basis)으로 인식되는 부채이어야 함
- 또한 채무면제의 원인이 도산과 관련되거나 방법이 주식으로 상환되는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채무면제가 법적 도산약정(statutory insolvency arrangement)의 일부으로 이루어짐
 - 채무자의 보통주 또는 이에 대한 권리로 상환

64) UK Government, 「Corporate Finance Manual- Loan relationships: Conten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finance-manual/cfm30000>, 검색일자: 2018. 6. 20.

65) Corporation Tax Act 2009 c.322.

- 도산조건을 충족하면서 채무관계가 특수관계인 관계가 아니어야 함
 - 도산조건이란 채무자가 도산에 따른 청산, 도산관리절차, 도산법에 따른 관리자의 임명 또는 이외 유사한 영국 이외의 국가의 법에 따른 상황을 뜻함

-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경우 채무면제익의 비과세 원칙이 예외가 되는 경우(deemed release)가 존재함
 - 특수관계인이 채권자가 손상된 채권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손상된 채권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가 이후에 성립되는 경우
 - 다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 손상된 채권을 독립된 당사자가격으로 취득함
 - 채권의 매입 1년 전부터 이후 60일 동안 채무자에 대한 지배력 변경(change in ownership)이 발생함
 - 지배력 변경이 없었다면 소유변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도산조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됨
 - 지배력 변경이 없었다면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됨

- 2015년부터 도산조건에 대해 법적 요건 또는 채무지분스왑 이외에 완화된 도산조건을 신설함⁶⁶⁾
 - 채무면제 이후 12개월내에 채무면제가 없었다면 회사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유의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됨
 - 상환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사가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회사의 자산가치가 우발상황 및 예측되는 부채를 고려한 부채금액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함
 - 이러한 완화된 조항은 비특수관계자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66) Finance (No. 2) Act 2015 schedule 7.

3. 일본

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제도

-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업재편·재생제도 개혁을 시작하여 2001년 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함⁶⁷⁾
 - 1997년에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순수지주회사 설립이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음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혁 사항임⁶⁸⁾
 - 2001년 일본은 조직재편세제를 창설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요건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힘⁶⁹⁾
 - 일본 「법인세법통달」 1-4-1상 ‘조직재편’은 법인의 합병, 분할, 현물출자, 현물 분배,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16에서 규정된 주식교환 등, 또는 주식이전 행위를 총칭하며, 「회사법」이나 「법인세법」보다 그 규정범위가 넓음

- 자산이전 시에는 이전자산 양도손익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전자산에 대한 지배가 조직 재편성 후에도 계속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이전자산 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함

67) 일본 내각부, 「Ⅱ-1. 事業再編・再生」, 2003. 11, <http://www5.cao.go.jp/j-j/kozo/2003-11/2-1.pdf>, 검색일자: 2018. 6. 9.

68) 일본에서는 지주회사를 「회사법」상 정의하지 하지 않으며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를 위한 법률」(이하 ‘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에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최종대차대조표상 별도로 명기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함) 합계액이 당해 회사 총자산 금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회사.’ 라고 정의함. 1947년 동법 제10조에서는 ‘금융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지주회사 자체를 금지하였으나, 1949년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살하는 경우 타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이를 통해 순수지주회사 설립은 금지되었으나 사업지주회사 설립은 허용됨

69) 일본 재무성, 「平成13年度税制改正の概要」, 2001,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zei003.htm, 검색일자: 2018. 6. 12.

- 조직재편성에 의해 자산이전 전후로 경제실태상 실질적 변화가 없는 경우 조직재편성(합병, 분할, 현물출자, 현물분배, 주식교환) 역시 이 원칙에 따름⁷⁰⁾
- 적격현물출자 및 적격주식교환 시 모회사는 출자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⁷¹⁾
 - 현물출자 및 주식교환으로 인해 이전한 자산은 원칙상 시가양도로 간주하나 적격현물출자로 인해 이전한 자산은 장부가액 또는 장부가 순자산으로 인식함
 - 주주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부가액,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 말 자산의 장부가액에 적격현물출자·주식교환 직전 자본금 등의 증감을 가감산한 금액으로 인식하여 과세를 이연함
 - 2016년 4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적격현물출자·주식교환으로 주주가 50명 이상인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의1에 따라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을 장부가 순자산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함
 - 장부가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 동 시행령 제119조의1은 상기 경우에 대해 전기 말 자산의 장부가액에 적격현물출자·주식교환 직전 자본금 등의 증감을 가감산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함⁷²⁾
- 개인 주주가 조직재편으로 인해 보유하던 주식을 이전하였으며 그 대가로 주식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직재편의 적격 여부와 무관히 주식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함⁷³⁾
 - 주식양도손익은 주식 양도 시 세무상 장부가액과 양도가액 간의 차액임
 - 주주가 받은 대가가 조직재편 관련 주식 외에 없는 경우 세제상 비적격조직재편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양도손익에 대해 과세이연함
 - 주주가 주식이전 대가로 주식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격조직재편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양도손익에 대해 과세함

70) 일본 재무성, 「組織再編税制に関する資料」,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c06.htm, 검색일자: 2018. 6. 10.

71)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의1 제9호 ㄱ, 동조의1 제10호 ㄱ

72) Deloitte(2016)

73) 小宮正俊·成田智弘(2010), p. 214.

〈표 Ⅲ-1〉 일본의 적격 여부에 따른 현물출자(주식교환) 세무상 분개 차이

구분	회사	차변	대변	참조
적격	모회사 (신주발행 분개)	자회사주식 (장부가액)*	자본금 (장부가액)	-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 또는 장부가 순자산가액으로 인계함 (세금 발생하지 않음)
	자회사	분개 없음 (주주가 변할 뿐임)		- 세금 발생하지 않음
	구 자회사의 주주	모회사주식	자회사주식 (장부가액)	- 원칙상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가 발생하나 교환대 가로 모회사(완전지배 모법인)의 주식만을 받은 경우 양도손익을 이연할 수 있음(세금 발생하지 않음)
비 적 격	모회사 (신주발행 분개)	자회사주식 (시가)	자본금 (시가)	-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시가로 취득함(세금 발생 하지 않음)
	자회사	자산	자산평가액	- 일정한 자산에 대해 시가평가함 (세금 발생함) - 단, 100% 그룹 내 비적격주식교환 시 평가손익 계상할 필요없음 (세금 발생하지 않음)
	구 자회사의 주주	모회사주식 (시가)	자회사주식 (장부가액)양 도익	- 시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손익이 발생함(세금 발생함) - 단, 교환대가로 모회사(완전지배 모법인)의 주식 만을 받은 경우 양도손익을 이연할 수 있음(세금 발생하지 않음)

주: 적격 현물출자·주식교환 시 모회사의 출자자산 인수가액은 주수가 50명 미만일 경우 장부가액
으로 함. 50명 이상일 경우 장부가 전기 말 자산의 장부가액에 적격현물출자·주식교환 직전
자본금 등의 증감을 가감산한 금액(2016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장부가 순자산가액)으로 함
자료: 관련 조문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

- 적격현물출자(주식교환)으로서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금전 등 비교부, 지배관계 계속, 주요자산 부채인계, 종업원인계, 이전사업 계속 등이 있으며, 현물출자법인과 피현물출자법인 간 지배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
- 지분비율이 100%로 완전지배관계인 경우 금전 등 비교부, 완전지배관계 지속전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분비율이 50% 초과 100% 미만인 지배관계인 경우 금전 등 비교부, 지배관계 지속전망, 주요자산 부채인계, 종업원인계, 이전사업 계속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사업목적인 경우 금전 등 비교부, 주요자산 부채인계, 종업원 인계, 이전사업 계속, 사업관련성, 규모·경영계획참여, 주식계속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표 Ⅲ-2〉 일본의 적격현물출자(주식교환) 요건(2017년)

적격 요건		완전지배관계	지배관계	공동사업목적
금전 등 비교부	출자(주식교환의 경우 주식대가)조건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	○	○	○
지배관계 지속	현물출자법인과 피현물출자법인 간 완전지배관계가 있거나 현재 지배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될 것	○	○	-
주요자산 부채인계	현물출자사업 관련 주요자산 부채를 이전할 것	-	○	○
종업원 인계	현물출자사업 관련 종업원(주식교환의 경우 완전 자법인 종업원)의 약 80% 이상의 고용을 인계할 것	-	○	○
이전사업 계속	현물출자사업(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법인 사업)을 피현물출자법인이 계속할 것	-	○	○
사업 관련성	현물출자사업과 피현물출자법인의 어느 한 사업 간 관련성이 있을 것	-	-	○
규모·경영 계획참여	사업 매출고·종업원 수 등 규모상 5배를 초과하는 차이가 없을 것, 또는 현물출자 법인의 임원과 피현물출자법인의 특정 임원(상무급 이상 전무 등) 중 어느 한 사람이 현물 출자 후에 피현물출자 법인의 특정 임원이 될 것	-	-	○
주식 계속보유	현물출자법인·주주가 현물출자를 통해 교부받은 피현물출자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	-	-	○
완전모자 관계계속	공동사업 목적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완전 모자관계가 계속될 것	-	-	○

주: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법인과 피현물출자법인간의 관계에 따라 적격요건을 완전지배관계, 지배관계, 공동사업목적 순으로 법인세법 제2조12 제14호 1, 2, 3에서 각각 규정함.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 간의 관계에 따라 적격요건을 완전지배관계, 지배관계, 공동사업목적 순으로 규정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1 제10호 1, 2, 동조 제12호 1, 2)

자료: 일본 재무성, 「組織再編税制に関する資料」, 2017,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c06.pdf 및 법인세법 제2조12의 14에 근거하여 저자가 작성

- 2016년 세제개정으로 외국법인에 자산을 이전하는 현물출자 중 일본 내 항구적 시설을 통해 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현물출자를 적격대상에서 제외함⁷⁴⁾
 - 일본 국세청은 해당 개정의 목적은 국내자산 등의 미실현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⁷⁵⁾
 - 외국법인에 국내자산 등을 이전하는 현물출자 중 그 국내자산 등의 전부가 이전 행위로 인해 외국법인의 항구적 시설을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적격현물출자로 간주할 수 있게 됨
 - 단, 이전 국내자산에 「법인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서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국내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경우, 이 국내자산을 현물출자 후 내부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 경우에 한해 적격현물출자로 간주함⁷⁶⁾⁷⁷⁾
 - 외국법인이 여타 외국법인에 국외자산 등을 이전하는 현물출자 중 그 국외자산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타 외국법인의 항구적 시설에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격대상에서 제외함⁷⁸⁾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특정국외자산 등을 이전하는 현물출자 중 그 특정국외자산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법인의 항구적 시설에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격대상에서 제외함
 - 특정국외자산 등이란 그 현물출자일 이전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69조 제4항 제1호 ‘외국세액 공제’에서 규정한 내부 거래 및 그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국외자산이 된 자산을 의미함⁷⁹⁾

74) 일본 재무성, 「平成28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16,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6/28taikou_03.htm, 검색일자: 2018. 6. 10.

75) 일본 국세청, 「第1 法人税基本通達關係」, 2016, <https://www.nta.go.jp/law/joho-zeikaishaku/hojin/160628/pdf/01-01.pdf>, 검색일자: 2018. 6. 10.

76)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14,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9호

77) 「법인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부거래’란 외국법인의 항구적 시설과 본점 등 간에 이루어진 자산이전, 역무 제공, 그 외 사실로 독립사업자 간에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들 간에 자산의 판매, 구입, 역무 제공 그 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임(「법인세법」 제138조 제2항)

78) 외국법인의 항구적 시설에 직접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현금, 예금, 저금, 국내 부동산 등을 제외한 재고자산, 그리고 유가증권은 고려하지 않음

79) 상기와 마찬가지로 현금, 예금, 저금, 국내 부동산 등을 제외한 재고자산, 유가증권은 고려하지 않음

- 2016년도 세제개정으로 외국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중 이전 국내자산을 모두 일본 내 시설 직접 귀속시킬 경우 적격현물출자에 포함시킴
 - 「법인세법」 제2조 제12항의14,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9항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해 일본 국내 자산·부채로서 정령으로 정한 자산·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적격현물출자로 규정함⁸⁰⁾
 - 2016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따라, 이전하는 국내자산을 전부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일본지점 등 고정사업장)에 직접 귀속시킬 경우에는 세제적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 단, 현물출자 후 일정한 국내자산을 내부거래를 통해 국외 본점 등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격 대상으로 포함함
 - 해당 법률은 적격현물출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주식교환의 경우 관련 규정 동조 제17항에서 관련 내용을 명기하지 않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법인세법」 제132조의2 조직재편성 관련행위 계산부인규정을 두어 조세제도 남용을 억제하고 있음
 - 「법인세법」 제132조의2는 법인이 조직재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관계를 부인하고 과세표준·결손금액·법인세액을 경정·재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인세법」 제132조와 동조의2, 3은 부인규정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세무당국에 부인권을 일임하고 있어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하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세무당국의 부인권을 합헌으로 판시함⁸¹⁾
 - 1978년 4월 2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법인세법」 제132조 규정의 취지, 목적에 비취보면 당해 규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준에 따라 동족회사 행위계산을 부인해야 하는 권한을 세무서장에게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함

80)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의4 국내 소재 부동산,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권리, 광업권, 채석권, 그 외 국내사업소 귀속 자산임(외국법인이 25% 이상 보유한 주식은 제외함)

81) 菅原計(2010), p. 117

- 2016년 2월 29일 야후·IDCF사건 최고재판결은 조직재편성 관련행위 계산부인 규정상 '부당성'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임⁸²⁾
 - 최고재판결 중 「법인세법」 제132조의2 조직재편성 관련행위 계산부인규정과 관련된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음

조직재편성은…조세회피의 수단으로서 남용될 염려가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32조의2는 세 부담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재편세제 관련규정을 조세회피 수단으로서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①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일반적으로 상정되지 않는 조직재편성 수단·방법에 근거하거나, 실태와 괴리된 형식을 만들어내는 등 부자연스러운지 여부, ② 세 부담 감소 외에 그와 같은 행위·계산을 할 합리적 사업 목적 및 기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당해 행위·계산이 조직재편을 이용하여 세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재편세제 관련 각 규정의 본래 취지 및 목적에서 면탈하는 양태로…

- 최고재판소는 조직재편세제 본래 취지 및 목적에 해당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세자인 법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당국의 계산부인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 일반적으로 세 부담의 경감 외의 목적이 없는 경우, 개별 적격요건은 형식상 충족하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하지 않는 구조를 짠 경우가 부인 가능성이 높아짐⁸³⁾

나. 사업구조조정 과세제도

- 일본은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조세 지원으로서 등록면허세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재무상 곤경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의 등의 익금에 대해 이월결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82) 北村 導人・黒松 昂藏(2016)

83) 川端 一眞(2014), p. 1

1) 사후적 사업구조조정

- 「법인세법」 제59조의1에 따라 회사갱생절차상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면제
의 등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이익은 익금처리하되 이월결손금 산입을 통해
최대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⁸⁴⁾⁸⁵⁾
 - 채무면제의 등은 총 3가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채무면제,
임원·주주로부터 금전 및 기타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익, 자산평가익에서
자산평가손을 제한 금액(하한 0)임
 - 자산평가익과 자산평가손은 각각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동법 제33조 제3
항규정을 따르며, 만일 자산평가익에서 자산평가손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
우에는 0으로 간주하여 공제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의3에 따라 이월결손금액은 청색결손금과 재해손실결
손금 합계액이자 법인세신고서 별표 5(1)「31」란이 음수일 경우의 절대치이며,
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특례결손금으로서 포함함
 - 결손금 이월기한은 2008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9년이었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경우는 10년임⁸⁶⁾
 - 손금산입액은 이월결손금액과 채무면제익 등의 총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하며,
기한이 지난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잔여 이월결손금액이 있을 경우 다
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민사재생절차상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면제
익 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이익은 익금처리하되 이월결손금 산입을 통해 최대 전
액을 공제할 수 있음⁸⁷⁾

84) 회사갱생절차는 시행령 제11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건형 도산제도로, 「회사갱생법」 또는 「금
융 기관 등의 갱생절차 특례」(“회사갱생법 등”)에 따라 갱생절차 개시결정이 난 경우를 의미함

85) 일본 국세청, 「會社更生等による債務免除等があった場合の欠損金」,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renketsu/11/11_02.htm, 검색일자: 2018. 6. 15

86) 일본 국세청, 「No.5762 青色申告書を提出した事業年度の欠損金の繰越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762.htm>, 검색일자: 2018. 7. 20.

- 채무면제의 등은 총 3가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채무면제, 임원·주주로부터 금전 및 기타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익, 자산갱신 평가를 한 경우 자산평가익에서 자산평가손을 제한 금액(하한 없음)임
 - 자산평가익과 자산평가손은 각각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동법 제33조 제4항 규정을 따르며 만일 평가익에서 평가손을 뺀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채무면제익과 수증익에서 감산함
- 민사재생절차는 자산갱신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산갱신 평가를 했다면 손금산입액은 이월결손금액, 채무면제익 등의 총합, 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⁸⁸⁾
 - 이월결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에 따라 법인세신고서 별표5(1) 「31」란의 금액이 음수일 경우의 절대치로 하며 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특례결손금으로서 포함함
 - 결손금 이월기한은 기업갱생절차와 마찬가지로 2008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9년이었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경우는 10년임⁸⁹⁾
- 자산갱신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액은 이월결손금액, 채무면제익 등의 합계액, 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서 청색결손금·재해손실결손금 당기공제액을 제한 금액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⁹⁰⁾
 - 이월결손금액은 법인세신고서 별표5(1) 「31」란의 금액이 음수일 경우의 절대치에서 청색결손금·재해손실결손금 당기공제액을 제한 금액으로 하며, 기한이 지

87) 민사재생절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건형 도산제도로 회사갱생절차와 유사함. 양자의 차이점을 보자면 민사재생절차는 모든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재건 계획을 재건 당사자가 제출함. 앞에서 살펴본 회사갱생절차는 경제적 곤경을 겪는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건계획은 재판소가 선임한 자가 전담한다는 점에서 민사재생절차보다 엄격한 제도임

88) '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신고서 별표4 「정산합계액(差引計)」임

89) 일본 국세청, 「No.5762 青色申告書を提出した事業年度の欠損金の繰越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762.htm>, 검색일자: 2018. 7. 20.

90) 일본 국세청, 「民事再生等評価換えが行われる場合以外の再生等欠損金の損金算入及び解散の場合の欠損金の損金算入に関する明細書」, 2016,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hojin/shinkoku/itiran2016/pdf/07_2_f4.pdf

난 결손금도 특례결손금으로서 포함함

- 결손금 이월기한은 자산갱신 평가를 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법인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산했으며 잔여재산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청산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함
- 단, 회사갱생·민사갱생절차 시 대법인의 100% 완전자법인 등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금액을 축소적용함⁹¹⁾
 - 대법인의 100% 완전자법인 등이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상호회사 등(“대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일반법인임
 - 대법인의 100% 완전자법인 등의 결손금 공제한도금액은 이월공제를 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공제 전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하는데, 회계연도 2017년에는 소득 금액의 55%를 공제한도로 함

〈표 Ⅲ-3〉 일본 대법인의 100% 완전자법인 결손금공제한도(2012~2018)

이월공제를 하는 사업연도	공제한도액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사이에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5%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5%
2018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자료: 일본 국세청, 「No.5800 一定の大法人等の100%子法人等における中小企業向け特例措置の不適用につい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800.htm>, 검색일자: 2018. 7. 20.

91) 일본 국세청, 「No.5800 一定の大法人等の100%子法人等における中小企業向け特例措置の不適用につい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800.htm>, 검색일자: 2018. 7. 20.

- 사적정리로 인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당해 수증익에 대해 자산평가손의 손금산입과 기한이 지난 결손금의 우선적용을 인정함⁹²⁾⁹³⁾
 - 「법인세 기본통달」 12-3-1(3)에 따라 채무자인 기업이 정리개시 명령에 따라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 다수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의도성이 없으며 정리 내용상 합리성을 인정 가능한 자산을 정리한 경우가 적용대상임
 - 채권면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증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2를 적용하여 자산평가손의 손금산입과 기한이 지난 결손금의 우선적용을 인정함

- 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자회사 등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무상대부를 제공한 경우, 이 경제적 이익은 기부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손금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법인세 기본통달」 9-6-1(4)에 따라 법인의 금전채권 중,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그 금전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액은 대손금으로서 손금처리함
 - 「법인세 기본통달」 9-4-1과 9-4-2에 따라 자회사 등에 채무면제 또는 무상대부 등을 제공한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이를 기부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⁹⁴⁾
 - 「법인세 기본통달」 9-4-1에 따라 법인이 자회사 등의 해산, 경영권 양도 등에 따라 당해 자회사 등을 위해 채무인수·손실부담·채권포기 등을 했으며 이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더 큰 손실을 유발할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 그 손실부담의 경제적 이익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92) 일본 경제산업성, 「企業再生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税制措置」,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kouza/html/05-tenpu-01.pdf>, 검색일자: 2018. 7. 20.

93) 일본 국세청, 「私的整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に基づき策定された再建計画により債権放棄等が行われた場合の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 (照會)」, https://www.nta.go.jp/law/zeiho-kaishaku/bunshokaito/hojin/011126/b_01.htm, 검색일자: 2018. 7. 20.

94) 여기서 '자회사 등'은 당해 법인과 자본관계가 있는 자 외에 거래관계, 인적관계, 자금관계상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자를 포함함(일본 국세청, 「第1款 寄附金の範囲等(子會社等を整理する場合の損失負担等)」, https://www.nta.go.jp/law/zeiho-kaishaku/tsutatsu/kihon/hojin/09/09_04_01.htm, 검색일자: 2018. 6. 11.)

- 「법인세 기본통달」 9-4-2 자회사 등을 재건하는 경우 무이자 대부 등 법인이 그 자회사에 대해 금전의 무상 또는 통상금리보다 저리로 대부 및 채권포기 등을 해준 경우 그 무상대부 등이 예를 들어 업적부진 자회사 등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합리적인 재건계획에 근거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이 무상대부 등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함
- 단, 2017년 1월 18일 도쿄지방법판결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손금산입을 불인정한 바 있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자회사에 대한 채무면제·무상 대부제공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나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음
- 단, 특정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특정동족회사가 다액의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유보금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정동족회사란 1주주 그룹이 발행주식의 50% 초과분을 지배하는 회사이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인 일정 회사 및 청산과정 중인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함⁹⁵⁾
 - 주주 그룹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의1에 따른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임
 - 「법인세법」 제67조 ‘특정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과세제도’는 주주가 배당을 부당하게 이연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동족회사의 내부유보금에 대해 특별한 법인세를 가산 부과하는 제도임
 - 특정동족회사의 재생절차상 이월결손금이 당기 과세소득을 초과하고 채무면제액이 많은 경우 법인세는 없는 대신 유보금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한이 지난 결손금보다 더 많은 기한 내 결손금이 있어 당기 과세소득은 없으나, 채무면제액에 해당할 만큼 자산평가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결손금공제 전 소득이 발생하게 됨

95) 國稅廳(2018), p. 122.

- 기한이 지난 결손금이 적을 경우 이익적립금 기준으로 산정한 유보공제액 역시 적어지는데 이로 인해 유보금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사전적 구조조정: 산업활력법, 산업경쟁력 강화법

-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후 과잉공급·과잉채무를 해소하고, 신속한 조직재편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법으로서 1999년에 「산업활력법」을 도입하였으며 2013년 일몰종료함⁹⁶⁾
 - 「산업활력법」은 1999년 도입 당시 5년 한시법으로 도입하였으며, 2003년과 2007년에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기한을 연장함
 - 1999년에는 인정계획 유형으로 사업재구축계획을 도입하였으며, 2003년에는 경영자원 재활용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을 추가하고 2007년에는 경영자원 융합계획, 기술활용사업혁신계획을 추가함
 - 2009년 4월 7일 「산업활력법」을 「산업활력 재생 및 산업활동 혁신 관련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했으며 2014년 1월에 일몰종료함
- 2014년부터 5년 한시법으로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및 재무내용 건전성을 향상할 경우 사업재편계획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법으로서 2018년에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 중임
 - 동법에서 사업재편 촉진 지원세제는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수익성·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우에 한정함
 - 과잉공급 산업분야(석유, 석유화학, 유리)에 대해서는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방향인 경우에 한해 지원세제를 적용함⁹⁷⁾

96) 「산업활력법」(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은 버블경제 붕괴 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상태로 일본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로서 제정됨(일본경제산업성, 「産活法の制定から現在までの変遷」,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sankatsuhou/outline/change.html>, 검색일자: 2018. 6. 10.)

97) 일본 경제산업성, 「産業競争力強化法の概要」, 2014. 1,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kyousouryoku_kyouka/pdf/gaiyo140117.pdf, 검색일자: 2018. 6. 15.

-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계획은 재무건전화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 고용 면의 배려, 사업구조변화가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 경감, 채권포기 시 자산평가손 손금산입제도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⁹⁸⁾
-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재편계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재무건전화, 고용 면의 배려, 사업구조변경, 진취적인 대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인정계획에 대해 특정사업재편 투자손실준비금, 생산성향상 설비 투자촉진세제 혜택을 과거에 제공했으며, 2018년 7월 현재 등록면허세 경감제도와 채권포기 시 자산평가손 손금산입 제도는 여전히 제공하고 있음

〈표 III-4〉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재편계획 인정요건

요건	사업재편계획
계획기간	3년 이내(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 한해 5년)
생산성 향상 (기업단위)	계획 개시 후 3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달성할 예정이어야 함 ① ROE \geq 2%p ② 유형 고정자산 회전율 \geq 5% ③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geq 6%
재무 건전화 (기업단위)	계획 개시 후 3년 이내에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해야 함 ① (유이자부채/현금흐름) \leq 10, ② 경상수지 \geq 경상지출
고용 면의 배려	계획 관련 사업소 내 노사조합과 협의를 통해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고용 안정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함
사업구조 변경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함 ① 합병, ② 회사 분할, ③ 주식교환·주식이전, ④ 사업·자산의 양수도, ⑤ 출자 취득, ⑥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획득, ⑦ 회사 설립, ⑧ 유한 책임사업조합에 대한 출자, ⑨ 상당수준의 시설·설비 철거 등
진취적인 대응	계획 개시 후 3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달성할 예정이어야 함 ① 신상품, 신서비스 개발·생산·제공 ② 상품 신생산방식 도입, 설비 능력 향상 ③ 상품 신판매방식 도입, 서비스 신제공방식 도입 ④ 신원재료·부품·반제품 사용, 원재료·부품·반제품 신규입방식 도입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事業再構築計画」,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sankatsuhou/outline/plan-a.html>, 검색일자: 2018. 6. 15.

98) 일본 경제산업성, 「事業再構築計画」,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sankatsuhou/outline/plan-a.html>, 검색일자: 2018. 6. 15.

- 특정사업재편투자 손실준비금 제도를 통해 자회사를 분리한 모회사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했음⁹⁹⁾
 - 청색신고법인이며 「산업경쟁력강화법」상 특정사업재편계획으로 인정받은 자가 계획상 기재한 특정사업재편 관련 특정회사의 특정주식 등을 각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인계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상임
 - 특정사업재편계획으로 인정받은 사업부문을 분리·통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리·통합으로 새로 출범한 회사에 대한 출자·용자금액의 70%까지를 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¹⁰⁰⁾
 - 적합한 준비금은 원칙상 적립기간(10년간) 종료일의 익사업연도부터 균등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함
 -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일인 2014년 1월 20일부터 2016년까지 3년 한시제도로 도입하였으며, 2017년부터 일몰 종료 결정함¹⁰¹⁾

〈표 Ⅲ-5〉 일본 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 제도 세부담경감 실적

(단위: 건, 백만엔)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적용건수	6	1	1
적용금액	273.034	24	236

자료: 일본 재무성, 「租稅特別措置の適用実態調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書(平成30年2月国会提出)」, 2018, 검색일자: 2018. 6. 20.

- 2014년 1월 2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청색신고법인이 특정생산성향상 설비 등을 취득하여 국내에 있는 당해 법인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일을 포함한 사업연도에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했음

99) 「조세특별조치법」 제55조의3, 제68조의43의 2

100) 일본 재무성, 「平成29年度税制改正に関する經濟産業省要望」, 2016. 8, p. 14, http://www.meti.go.jp/main/yosangaisan/fy2017/pdf/01_12.pdf, 검색일자: 2018. 6. 10.

101) 일본 재무성, 「平成29年度税制改正の大綱」,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7/29taikou_03.htm, 검색일자: 2018. 6. 10.

- 특별상각한도액은 특정생산성향상 설비 취득가액의 50%(건물·건축물일 경우 25%) 상당액으로 하되, 2014년 1월 20일부터 2016년 3월 31일 이내에 취득·사용한 설비에 한해 취득가액 전액을 즉시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채권포기를 포함한 재편계획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자산평가 갱신 시에 자산평가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¹⁰²⁾
 - 채권포기란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용자대상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거래처기업에 대한 경영재건지원책 중 하나임
 - 채권포기를 받을 예정인 기업은 신청 시 자사에 대한 재무 감사보고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계획 인정 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재편계획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는 총 4가지로 재무 건전화 목표에 대한 공인 회계사·감사법인의 보고서,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권포기 관련 합의서류, 감사 등 주주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표명하는 서류, 재건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보고서임
 - 인정계획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상추이표 및 유이자 부채잔고표 등 총 3단계에 걸쳐 필요서류를 채권포기 합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¹⁰³⁾
 - 신속한 처리를 위해 채권포기를 포함한 계획이 인정받은 경우, 해당 인정기업의 채권포기 시 자산평가손 손금산입을 허용함
 - 원래대로라면 미실현손실이 있는 자산은 처분 후 손금산입해야 하나, 채권포기를 받을 예정인 사업재구축계획 인정기업에 한해 자산평가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102) 일본 경제산업성, 「債權放棄を含む計書」,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sankatsuhou/outline/plan-d.html>, 검색일자: 2018. 6. 15.

103) 합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결안을 거친 후 재산목록, 자산 평가갱신 등을 반영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분기별로 감사받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분기별로 매상추이표와 유이자 부채잔고표를 제출해야 함

-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재편계획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인정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출자 수취, 자산 양수도, 회사 설립 등을 할 경우 관련 등록면허세를 경감함

〈표 III-6〉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재편계획상 인정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세율 (단위: %)

조세특별조치법 제80조 제1항	조치내용	통상세율 (A)	특례세율 (B)	경감세율 (A-B)	
제1호	회사 설립, 자본금 증가	0.7	0.35	0.35	
제2호	합병	0.15	0.1	0.05	
	(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합병)	0.7	0.35	0.35	
제3호	분할을 통한 설립 또는 자본금 증가	0.7	0.5	0.2	
제4호 (매매)	부동산소유권 취득	토지	2.0	1.6	0.4
		건물	2.0	1.6	0.4
	선박 소유권 취득	2.8	2.3	0.5	
제5호	합병시	부동산	0.4	0.2	0.2
		선박	0.4	0.3	0.1
제6호	분할시	부동산	2.0	0.4	1.6
		선박	2.8	2.3	0.5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産業競争力強化法における事業再編計画の認定要件と支援措置について」, 2018. 6.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kyousouryoku_kyouka/180604_gaiyou.pdf, 검색 일자: 2018. 7. 25.

4. 독일

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제도

- 독일 「조직재편세법」(Umwandlungssteuergesetz, UmwStG) 제20조에 따라 현물출자·주식교환 시 이전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FMV)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임¹⁰⁴⁾

- 「조직재편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 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Fair Market Value, FMV)로 하며, 자본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독일 「회사법」상 주식교환은 현물출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그 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¹⁰⁵⁾
 - 단, 적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가 외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식할 수 있음
- 현물출자법인은 출자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장부가액 또는 중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재편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법인의 자산 인식가액은 양수도 당시 자산의 시가와 취득비용의 합계액으로 간주함
 - 주식교환을 통해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시가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모회사가 향후 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의 원가는 주식교환 시점의 시가가 됨
 - 단,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현물출자법인의 양수자산은 장부가액 또는 중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되 시가를 상한으로 함
 - 중간가액은 장부가액을 초과하고 시가에 미달하는 임의가액으로 강학상의 용어임¹⁰⁶⁾
 - 또한 피현물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함
 - 현물출자법인이 출자자산을 장부가액 또는 중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조건으로는 동법 제2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총 4가지가 있음
 - 출자자산의 미실현이익(hidden reserve)이 향후 현물출자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통해 과세될 것이 확실할 것
 - 출자된 기업자산의 대변항목이 차변항목보다 작거나 같을 것(자본은 고려하지 않음)
 - 출자된 기업자산 거래 시 발생한 이익을 현물출자법인에 과세함에 있어 독일

104) 황남석(2014), p. 538.

105) KPMG(2014), p. 56.

106) 황남석(2009), p. 324.

의 과세권이 배제되지 않을 것

- 사업 전체 또는 일부, 또는 파트너십 지분이 현물출자법인의 신주를 대가로 독일 법인인 대상법인에 이전될 것

○ 신주 외에 기타 대가(Boot)를 추가 지급하였으며 그 일반적 가치가 거출 사업자산 장부가액의 25% 또는 50만유로(단, 출자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을 상한으로 함)를 초과하는 경우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인식해야 함

- 상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중간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독일은 「법인세법」 제8b조에 따라 법인의 주식양도익 중 5%에 대해서만 자본소득으로서 과세하며, 실질 세부담률은 약 1.5~1.65%임

○ 「독일법인세법」 제8b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자본이득 중 5%에 대해서만 자본소득으로서 과세하고 95%는 비과세함¹⁰⁷⁾

- 단, 자본손실은 공제할 수 없음

○ 2018년 현재 독일의 법인세율은 15%이며 지방 영업세율 14~17%, 연대부가세(Solidaritaetszuschlag) 5.5%를 가산하면 실질 적용세율은 약 30~33%로 자본이득에 대한 실질 세부담률은 1.5~1.65%(자본이득 중 5%×적용세율 30%)임¹⁰⁸⁾

□ 자회사 주주가 주식교환·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모회사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기존에 보유하던 자회사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승계하며, 향후 모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계가 발생함¹⁰⁹⁾

○ 주식교환 시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 주식을 양도한 경우 자회사 주주에 대해 과세관계가 발생함

107) 독일 「법인세법」(KStG) 제8b조 제2항, 제3항

108) Deloitte, 「Corporate Tax Rates 2018」, 2018. 2,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corporate-tax-rates.pdf>, 검색일자: 2018. 7. 30.

109) KPMG(2014), p. 58.

- 「조직재편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세무상 적격요건을 충족하면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음
 - 세무상 3가지 적격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으며, 주식 외 기타 대가(Boot)를 받았더라도 기준가액 이하일 경우는 과세관계가 발생하지 않음
 - 매수법인(주식교환 모법인)이 대상법인(주식교환 자법인)의 주식의결권 중 과반수를 매수 후 소유해야 함
 - 법인주주가 대가로 받은 매수법인 주식을 미래에 양도할 경우 발생할 주식양도익에 대해 독일의 과세권이 배제되지 않아야 함
 - 동조 제2항에 따라 법인주주가 대가로서 주식 외의 기타 대가(Boot)을 받았더라도 그 가액이 이전자산 장부가액의 25% 이하인 경우 또는 50만유로(이전자산의 장부가액을 상한으로 함)이하여야 함

-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익에 대해서는 25%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주식이 사업자산인 경우 양도익 중 6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납세자의 선택으로 일반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¹¹⁰⁾
 - 개인주주가 사적재산(private property)으로서 보유했던 주식의 양도익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5%에 연대부가세(Solidaritaetszuschlag) 5.5%를 가산하고 경우에 따라 교회세(Kirchensteuer) 8% 또는 9%를 가산함
 - 개인주주가 사업자산(business asset)으로서 보유했던 주식의 양도익에 대해서는 60%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자 본인의 선택으로 누진세율 일반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양도로 인한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양도로 인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하고 남은 자본손실은 이월할 수 있음

110) IBFD, 「4.5.2.3. Share acquisition Seller: Germany-Mergers & Acquisitions」, 2018,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252Fcollections%252Fma%252Fhtml%252Fma_de_s_004.html&WT.z_nav=outline&hash=ma_de_s_4.5.2.3, 검색일자: 2018. 7. 20.

- 단, 「조직재편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익에 대해 향후 독일의 과세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과세이연을 허용함
 -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익에 대한 독일의 과세권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함
 - 개인주주가 주식 양도대가로서 주식 외에 기타 대가(Boot)를 받은 경우 해당 기타 대가(Boot)분은 과세대상 거래임
 - 단, 기타 대가분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근거한 주식교환에 의해 과세이연받을 수 있음¹¹¹⁾

- 피현물출자법인은 현물출자법인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이자 대가로 받은 현물출자 법인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인식해야 함¹¹²⁾
 - 현물출자법인이 자산취득가액을 피현물출자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 경우, 피현물출자법인에 과세관계가 발생하지 않음
 - 이전 대상인 부채가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 현물출자법인은 부채를 자산 장부가액으로 인식해야 하며, 부채 초과액은 피현물출자법인에 과세됨
 - 피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법인의 주식 외 대가를 받았거나 당해 대가의 시가가 이전대상 자산의 장부가를 초과한 경우, 현물출자법인은 당해 대가의 시가를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인식해야 하며 초과분은 피현물출자법인에 과세됨

- 출자자산이 「조직재편세법」 제20조의 적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피현물출자법인에 과세관계는 발생하지 않음¹¹³⁾
 - 이전대상(현물출자)인 모든 사업이 계속될 경우(Going concern), 이전자산이 독립사업(여타 사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또

111) KPMG(2014), p. 57.

112) KPMG(2014), pp. 80-81.

113) IBFD, 「4.4.1.2. Transferring company: Germany-Mergers & Acquisitions」, 2018,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collections/ma/html/ma_de_s_004.html&WT.z_nav=outline&hash=ma_de_s_4.4.1.2., 검색일자: 2018. 7. 20.

는 파트너십의 지분일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관계가 발생하지 않음

- 독일 「조직재편세법」 제26조는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현물출자회사가 대가로 취득한 현물출자회사의 지분을 출자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 출자차익에 대해 소급과세하도록 규정함
 - 피현물출자법인은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현물출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7년간 매년 5월 말에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시 현물출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
 - 양도로 인해 발생한 출자차익은 그 자산 구성에 따라 I과 II형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출자시점 이후 매년 7분의 1씩을 감액함
 - 「조직재편세법」 제26조 제2항의 제1문과 제2문에 따라 출자차익I은 출자된 기업자산의 출자시점 현재 시가에서 양수회사의 평가가액을 제한 것으로, 출자시점 이후 매년 7분의 1씩 감액함
 - 단, 출자된 기업자산에 물적회사·산업공제조합 지분이 포함된 경우 「조직재편세법」 제22조 제1항 제5문, 동조 제2항에 따라 출자차익II는 출자된 지분의 출자시점 현재 시가에서 출자자가 취득지분을 평가한 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출자시점 이후 매년 7분의 1씩 감액함
- 7년 내에 피현물출자회사가 현물출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출자차익에 대해 소급과세된 경우, 「조직재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자자산의 평가가액을 출자차익만큼 증액할 수 있음
 - 출자자산이 시가 미만으로 출자되었으며, 현물출자법인의 자산에 속한 경우에 한함
 - 소급과세된 출자차익을 현물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하고 해당 자산의 평가가액을 출자차익만큼 증액할 수 있음
 - 출자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급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단, 독일 「조직재편세법」 제20조 제3항은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 (capital gain)에 대해 독일의 과세권이 배제될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른 과세이 연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로 규정하고 기업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함
 - 독일 「조직재편세법」 제20조 제2항은 물적회사의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권을 독일이 상실할 경우, 물적회사로 하여금 거출된 기업재산 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힘
 - 동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납세자가 당해 미실현이익 과세에 대해 즉시 납세하 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제1목 또는 제2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무이자로 당해 세액의 5분의 1씩을 연납할 수 있도록 함
 - 아래 제1목 또는 제2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에 걸쳐 세액을 연납할 수 있음
 - 제1목의 요건은 상기 조항을 적용하는 취득한 지분의 양도이익에 대한 독일의 과세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을 것임
 - 제2목의 요건은 지침 2009/133/EG 제8조로 인해 지분교환차익이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한 지분을 향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이익은 이중과세방지협약 규 정에도 불구하고 피취득회사 지분을 양도할 경우 과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 세해야 한다는 것임
 - 독일 「조직재편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과 TFEU조약 제49조 ‘개업의 자유’, 제63조 ‘자본이동의 자유’ 간 정합성을 다룬 사례로는 1995년 DMC 사건이 있 음¹¹⁴⁾
 - 재판소는 당해 이득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한 EU 회원국의 관할 내 미실현 자본이득으로 발생한 경제가치에 과세할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한 선행판결을 답습함¹¹⁵⁾
 - 당해 자산이 국내에 있었다면 자본이득을 과세할 수 있었던 회원국은 당해 자 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이득의 실제 실현시기 외에 과세시기

114) Case C-164/12 DMC(2014) ECR I-0000. 상세 내용은 宮本十至子(2015), pp. 350~352를 참조할 것

115) Case C-371/10 National Grid Indus BV(2011) ECR I-12273

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봄¹¹⁶⁾

- 독일 「조직재편세법」상 독일 국내의 출자와 유럽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구별하지 않으며 국내, 국외, 국제출자 모두를 통일적으로 규율함¹¹⁷⁾

나. 사업구조조정 과세제도

1) 이월결손금

- 「법인세법」(KStG) 제8c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분율 등에 25%를 초과하는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폭이 50% 이하일 경우 이월결손금을 적용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8c조 제1항 제1문은 5년 이내에 25% 이상 직·간접적인 지분율 변화가 있을 경우, 즉 25% 이상 주식 또는 의결권을 양도한 경우 이월결손금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함
 - 단, 동조 동항 제2문에 따라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지분율 등의 변화가 50% 이하일 경우 이월결손금 적용을 허용하되 결손금을 안분비율로 소멸시킴
 -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결의권이 양도된 경우 모든 이월결손금을 소멸시킴
- 과거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재편과정으로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결손금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였으나, EU Commission에서 이것이 State aid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자 독일은 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중지함¹¹⁸⁾

116) Case C-261/11, Commission v Denmark(2013)

117) 황남석(2014), p. 519.

118) KPMG(2014), pp. 142~143.

2) 채무면제익

- 독일은 1998년 전까지 기업구조조정 시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갱생이익(Sanierungsgewinn)으로서 비과세처리함
 - 1998년 전까지 독일은 사업 갱생의 필요성·가능성·적격성을 갖춘 경우, 회사를 갱생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갱생이익(Sanierungsgewinn)으로 보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과세함¹¹⁹⁾
 - 갱생이익(Sanierungsgewinn)이 이월결손금과 상쇄되므로 이중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1998년부터 비과세 관련조항을 폐지함

-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연방 재무부 「회사재건지침」(BMF vom 27.3.2003: Ertragsteuerliche Behandlung von Sanierungsgewinnen)에 근거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법적·사적정리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사업갱생이익으로 보고 비과세를 허용함
 - 「회사재건지침Ⅱ」 3에 따르면 사업갱생이익은 갱생목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재산의 증가분임
 - 「회사재건지침Ⅱ」 4에 따라 사업갱생이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① 갱생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② 채무면제가 회사갱생에 적합하여야 하고, ③ 채권자의 갱생의지가 있어야 함
 - 재무개선 갱생증서(Besserungsschein) 교환을 통한 채권면제로 인해 발생한 갱생이익도 세무상 특혜대상에 포함됨¹²⁰⁾
 -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222조에 따라 회사는 신청을 통해 손실 상

119) 1998년 개정 전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66호

120) 재무개선 갱생증서는 채무면제와 재무개선조항을 함께 묶은 재무개선조항부 채권포기(Forderungsvorzicht mit Besserungsschein)에서 사용하는 계약증서임. 재무개선조항은 채무자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잔여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속인데, 이를 문서화한 것이 재무개선 갱생증서임. 조건 없는 채권면제는 독일 상법 제275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특별 이익에 해당하며, 재무개선조항부 채권포기는 독일 민법 제158조 제1항 정지조건부 채권면제(aufschiebend bedingter Erlass) 또는 동조 제2항 해제조건부 채권면제(auflösend bedingter Erlass)에 해당함

쇄 후 남은 갱생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수 있으며, 동법 제227조에 따라 유예된 세금은 일정한 조사를 거쳐 전액면제받을 수 있음

- 2016년 11월 독일 연방재정법원(BFH)에서 「회사재건지침」만을 근거하여 채무면제익을 세무당국이 비과세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독일정부는 관련 규정을 재검토 중임
 - 독일 연방재정법원은 2016년 11월 28일 세무당국이 「회사재건지침」만을 근거하여 채무면제익(Sanierungserlass)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줄 재량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림¹²¹⁾
 -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채무면제익 관련 과세조항을 정비하고 파산 위기 법인에 대해 면세조치를 계속 부여하기 위해 2017년에 「소득세법」(EStG) §3a 및 「영업세법」(GewStG) §7b를 새로 도입하였음
 - 「소득세법」 §3a (1)는 기업재편 목적으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자본소득·영업소득 증가분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기함
 - 단, EU Commission에서 상기 두 조문이 State aid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으로 2018년 현재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독일 의회는 관련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힘¹²²⁾
- 「법인세법」 제8b조 제3항 제4문에 따라 모법인이 자법인의 대부금을 감면해주거나 차입보증을 서서 상환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불산입함¹²³⁾
 - 해당 조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자법인은 모법인이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과거 출자하였거나 현재 출자 중인 기업임

121)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17), 「BETREFF Sanierungserlass; Beschluss des Großen Senats des BFH vom 28. November 2016 (GrS 1/15)」, 2017. 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Einkommensteuer/2017-04-27-sanierungserlass-beschluss-des-grossen-senats-des-BFH.pdf?__blob=publicationFile&v=2

122) Deutscher Bundestag(2018), pp. 41~42.

123) EY(2014), pp. 2~3.

- 모법인이 자법인에게 대부금을 감면해주거나 자법인의 차입보증을 대신 상환하여 발생한 이익감소분은 「법인세법」 제8b조 제3항 제4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이익의 감소’에 포함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임
- 2014년 독일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은 2014년 3월 12일부 판결을 통해 「법인세법」 제8b조 제3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합헌이라는 견해를 판시함
 - 판결문 중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면 출자자는 채무를 포기하고, 차입자는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여 과도한 채무면제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이 포함됨

5. 주요국의 과세체계 비교

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제도

-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조사대상국은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는 현물출자 등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과 외국자회사의 주식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한시법인 반면에 다른 주요국들은 상시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조사대상 주요국들은 지주회사 설립이나 외국자회사 주식에 대해 별도의 특례가 없으며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과세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 상시법으로 운용하고 있음
 - 모든 조사대상국이 과세특례상 처분 등 후속적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세를 이연함
-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취득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및 지분보유와 사업의 지속성 요건이 대부분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나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에서는 지분율 요건은 없으나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40%(상장법인 등은 20%)를 적용하며, 2년간 지분보유 및 사업지속이 이루어져야 함
 - 미국은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 하며(지분율 80%), 지분보유 및 사업지속이 요구되나 일종의 조세회피방지규정 형식으로 적용될 뿐 구체적인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음
 - 영국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25%를 취득하거나 통제권(통상 50%)을 가질 수 있는 공개매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분보유 및 사업지속에 대해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은 교환전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이러한 지분보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며, 100%가 아닌 경우에는 종업원 지속요건(80%)과 사업의 지속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단, 공동사업목적으로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지배관계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교부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함
 - 독일은 자회사의 최대주주 요건이 존재하며, 7년 내에 현물출자 등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함
 - 독일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법인: 실질적으로 95% 면제) 또는 부분과세(개인: 40% 면제)의 예외임
- 현물출자 등을 받은 회사의 취득가액은 국가마다 일부 상이하며, 사후적으로 주식 처분 시 물량흐름의 가정과 자회사 주식 처분 시 과세는 확인되지 않음
- 현물출자 등을 한 주주의 취득가액은 모든 국가가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나, 현물출자 등을 받은 회사의 취득가액은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은 장부가액, 영국과 독일은 시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독일을 미실현이익(hidden reserve)이 독일에서 추후 과세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장부가액으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함

- 현물출자 등에 과세이연이 적용된 후 동일한 다른 주식 보유 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물량흐름의 가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음
- 현물출자 등을 받은 회사의 주식 처분으로 인한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 과세이연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와 독일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주주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본은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사업의 연속성 요건에서 이를 규제할 가능성이 존재함

- 우리나라만 외국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외국법인에 대해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요건도 자회사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이연의 경우 처분 등의 행위 시가 아닌 4년이 속하는 날까지 이연함
 - 그러나 미국·영국·일본 및 독일은 외국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내국법인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표 III -7〉 현물출자(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항목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지주회사 등에 대한 별도특례 여부	O	X	X	X	X
한시법 여부	O ¹⁾	X	X	X	X
과세특례	과세이연	과세이연	과세이연	과세이연	과세이연
요건					
지분율	자회사: 40%(20%) ²⁾	자회사: 80%	자회사: 25% or 통제권 공개매수	자회사: 교환전 50% 초과 또는 100% ⁴⁾	최대주주
지속·보유	2년	실질과세를 준용하여 적용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 적용	100% 아닐시 사업지속전망요건 ⁴⁾	7년
취득가액					
주주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법인	장부가액	장부가액	시가	장부가액 또는 (선기말 자산장부가액-자본금증감액) ⁵⁾	시가 원칙(장부가액, 증감가액 가능)
처분시 물량흐름가정	과세특례 주식 먼저	- ³⁾	- ³⁾	- ³⁾	- ³⁾
자회사 주식 처분시 주주과세 여부	X	연급없음	연급없음	△ ⁴⁾	X
외국자회사 주식의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별도의 조분으로 구분하여 적용	내국법인과 동일한 대우	내국법인과 동일한 대우	외국법인도 가능	내국법인과 동일한 대우

주: 1) 주식교환에 대해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과세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도 상시법으로 볼 수도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분비율요건이 없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40% 또는 20%)을 기재할 명확한 근거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제공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식된다는 내용만 존재하므로 다른 주식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4) 완전자회사(100%)가 아닌 경우 종업원 80%와 사업의 연속성 전망이 있어야 함. 지분의 연속성 예측도 포함되므로 사후관리 조항은 없으나 지분의 연속성 측면의 위해 가능성이 존재함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의1 제9호에 따라 주주의 수가 50명 이상이면 전기말 자산장부가액에서 자본금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을 고려함

자료: 제III장의 내용을 저자가 정리

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제도

-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나 법체계 및 내용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사후적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한시법인 반면에 다른 주요국들은 상시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전적 구조조정에 대한 법령 및 이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며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기업활력법」과 유사한 사전적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인 「사업경쟁력 강화법」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은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만 확인되는데,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과세이연과 비과세, 결손금 차감 등으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채무면제 이외에도 자산매각, 채무인수변제, 주주자산양도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4년 이연 이후 3년간 과세하는 형태임
 - 미국·영국 및 독일은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결손금 등을 공제 후 비과세하고 있음
 - 미국은 자산양도에 대해 자산양수회사의 주식 등이 양도회사와의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비과세하는데 이는 새로운 회사 설립을 위한 것임
 - 다만, 독일은 채무면제이익의 비과세요건이 EU 집행위원회의 정부보조금에 부합하는지를 판단받고 있어 실제 적용가능 여부는 불확실함
 - 일본은 주주의 자산양도에 따른 수증이익·채무면제익 및 자산평가익에 대해 기간 등의 제한없이 과거 결손금 발생액과 상계를 허용함

-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도 파산 또는 도산법하의 요건은 회사의 사업 악화 등에 대한 요건은 유사하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와 일본은 채무면제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각 법령 또는 채권단의 협약 등 형식적인 요건에 따라 채무면제가 이루어져야 함
- 반면에 미국·영국 및 독일은 법령 또는 약정 등에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도 적용이 가능함
 - 미국과 영국은 지급불이행이 이루어진 부분 중 지급이 불가능한 금액이나 12개월 내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등 실질적인 지급불이행을 요건에 포함하고 있음
 - 독일은 법률상으로는 납세자가 구조조정 필요성·적합성·의지 등의 제반여건을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거나 채무상환 등 부채에 대한 요건을 부여한 국가는 우리나라만 존재함
 -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는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음
 - 일본은 주주의 자산 증여 등에 대해 과세혜택을 위한 요건으로 채무상환이나 부채비율의 유지 등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
 - 다른 주요국은 채무면제이익 이외에 다른 종류의 거래에 대한 과세혜택이 없이 비교대상이 아님
- 사전적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데 그 형태는 매우 차별적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사후적 구조조정 과세특례를 사전적 구조조정과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반면에, 일본은 관련 생산성향상시설투자촉진세제로 운영하여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한 설비 등에 대한 가속상각·세액공제를 적용함
 - 따라서 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따라 회사에 대한 주주·채권단 지원에 대한 과세특례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운영됨

〈표 Ⅲ-8〉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⁴⁾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별도 특례 여부	○	○	○	○	○
한시법 여부	○	X	X	X	X
사전적 사업구조조정 특례	○	X	X	○ ³⁾	X
과세특례 종류					
자산매각	○	○			
채무인수변제	○				
주주자산양도	○			○	
채무면제	○	○	○	○	○
주식교환	○				
증복자산양도	○				
기타				○ ¹⁾	
채무면제과세특례					
과세특례내용	과세이연	비과세	비과세	결손금 공제 ²⁾	비과세 ⁵⁾
요건	재무구조 개선계획 또는 사업 재편계획	파산법 또는 지급불능	도산법 또는 12개월 내 도산가능성	회사갱생법	납세자의 필요성입증 (민법 또는 회생계획)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의 차별성	다르게 처리함 (결손금 발생시까지 이연)	동일	동일	동일	동일 ⁶⁾
채무상환 등 부채관련 요건	일부 존재	N/A	N/A	없음	N/A

주: 1) 자산평가를 통한 손실과 면제이익의 상계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함.
 2) 이월결손금의 이월기간과 관계없이 관련 이익과 상계가가능함
 3)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응하는 제도로써 생산성향상 설비 등에 대한 특별상각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17년 일몰되었음
 4) 독일의 세제는 정부보조 위반인지 EU 위원회의 검토 중에 있음
 5) 이 경우 강제적인 과세소득 손실인식(공정가치에 따른 감액),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 불공제 등이 적용됨
 6) 법령 등에서 정의되지는 않아 불확실성이 있으나 실무상 채무면제로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자료: 제Ⅲ장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IV. 시사점

1. 과세특례의 계속적 운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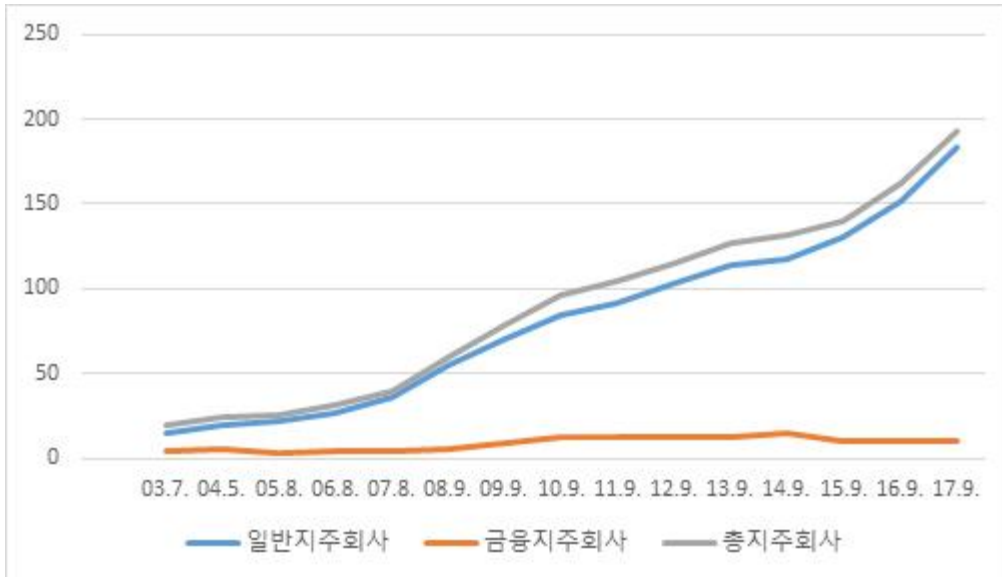
가. 소유구조 개선

- 우리나라 지주회사 과세특례는 지주회사 설립에 있어 거래비용을 줄이는 큰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2017년 지주회사로 전환이 많았던 것은 지주회사 자산요건 증액(1천억원 → 5천억원)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¹²⁴⁾
- 지주회사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9월 말 현재 193개에 이르고 있는데 세제의 적용 대상은 꾸준히 존재하고 있음

124)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2017. 11, p. 3.

[그림 IV-1] 지주회사의 누적 개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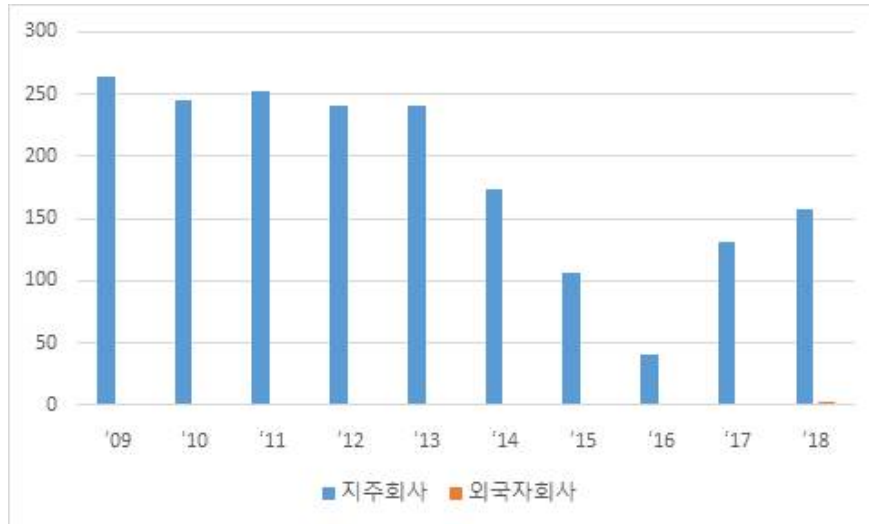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2017. 11. p. 4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 한편, 과세이연의 이자상당액인 조세지출금액은 지주회사의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외국자회사의 경우는 미미한 수준임
 - 과세이연의 조세지출금액은 과세이연금액이 아닌 이자상당액이므로 그 금액 효과를 다른 공제·감면과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 다만, 이자상당액은 과세 시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누적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2016년 실적은 41억원이며, 외국자회사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천만원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6년 실적이 2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음

[그림 IV-2] 지주회사와 외국자회사에 대한 조세지출금액

(단위: 억원)



주: 2017년과 2018년은 추정치임
 자료: 매년도 대한민국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 과세특례의 이용이 일정 수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과세특례 등에 대한 계속적 운영 여부는 적용대상 납세자, 운영기간, 비교법적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적용대상 납세자는 얼마나 폭넓은 대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운영기간은 특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을 고려함
 - 비교법적 측면은 주요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임

- 지주회사 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더욱더 제한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2017년 개정되어 지주회사 요건 중 자산규모가 1천억 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가되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단만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연구개발·고용촉진 과세특례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과 같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제가 아님
-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제도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는데 최소 20년 가까이 적용되고 있음
 - 현물출자 등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이연은 2000년부터 운영되어 19년간 지속되고 있음
 - 이전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 시 과세이연이 존재하여 법인주주에 대한 부분은 2000년 이전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있었음
 -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2001년부터 운영되어 18년간 지속되고 있음

〈표 IV-1〉 현물출자 특례 운영기간

구분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일몰	제정연도 ¹⁾	운영기간
현물출자	제38조의2	현물출자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 등	2018	2000	19년
	제38조의3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		2001	18년

주: 1)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의 「조세감면규제법」은 제외함
 자료: 각 조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함

-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의 운영은 지주회사 수요에 대해 어느 정도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들과는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짐
 - 19년간 운영된 과세특례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들이 향후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애초부터 소유구조를 지주회사 형태로 유지해오고 있는 기업들에는 차별적인 세제가 될 수 있음

- 소유구조의 합리성을 가져오고 있는 기업들을 장려해야 하나 오히려 이러한 세제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음
- 과거 경제발전 기간 시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보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보완은 19년간 운영으로 충분할 수 있음
 - 현재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사업확장 시 소유구조에 대한 개념이 부여된 상태로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주식양도차익이 큰 경우는 기업 설립이 오래될수록 이러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설립한 기업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비교법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설립 또는 외국자회사의 소유구조 변경 과세특례제도는 일몰이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확인됨
 - 일반적인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는 주요국들도 모두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지주회사 설립이나 외국자회사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제도는 일반적인 현물출자 또는 주식교환에 대한 특례 성격으로 소유비율요건이 이에 비해 완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지주회사이거나 20%의 지분율이 규정되어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완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지주회사 설립과 외국자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몰종료하고 향후 보다 포괄적으로 모든 기업들에 적용되는 상시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상시세제는 「법인세법」의 현물출자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되, 「법인세법」상 우리나라의 지분율 요건 등이 미국 등과는 유사하나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제한적 이므로 일부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현물출자 등을 받는 회사가 아닌 다른 주요국가 같이 현물출자 대상 회사

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현물출자받는 법인에 대해서만 요건이 주어지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됨

- 다만, 정책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점과 상시세제의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기간 연장은 고려할 수도 있음
 - 재연장은 없다는 내용을 납세자들에게 알리면서 최종적으로 일부 기간의 연장은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상장기업은 계획단계를 제외한 지주회사 전환 발표 이후 공개매수에 따른 현물출자기간까지 약 8개월 정도 소요¹²⁵⁾(17개 회사 대상으로 최대 1.3년, 최소 4.6개월)된다는 점에서 2~3년 정도를 판단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재연장이 없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향후 추가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납세자들이 가질 수도 있는 단점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보완방법은 과세 혜택의 수준을 기간경과에 따라 낮추는 것인데 이는 아래 2. 가.에서 기술함
 -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상시세제를 입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특법」상 특례를 바로 일몰종료하면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몰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사업구조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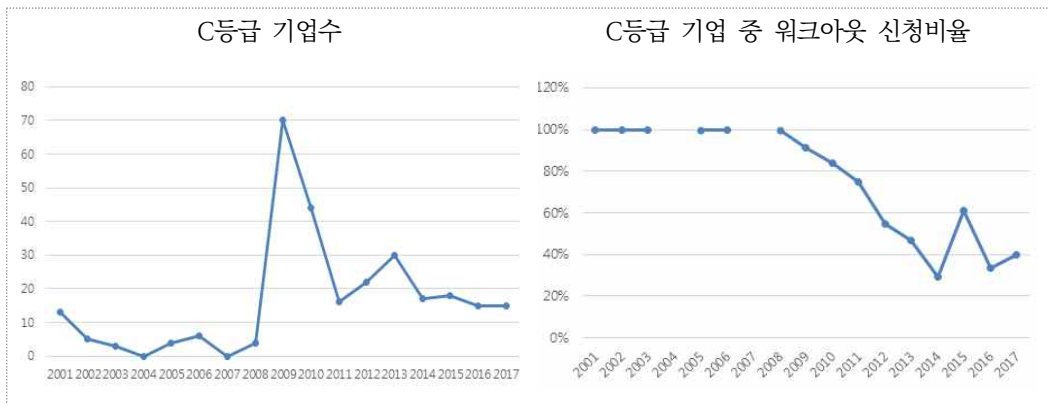
-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는 비교법적으로나 대상 등 모든 측면에서 일몰을 연장하는나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주요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25) 정대로·서윤석(2016), p. 5.

- 사업구조조정제도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음
 - 더구나 사업구조조정 세제는 불황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불황기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C등급 기업 수는 금융위기가 절정인 2009년 70개를 정점으로 이후 저성장추세에도 저금리 정책으로 이후 많이 감소되고 있으며, 워크아웃 개시 비율은 2009년 91.4%에서 워크아웃에 개시권한 변경, 자율협약 등으로 인해 2017년 40%로 하락함¹²⁶⁾

[그림 IV-3] 연도별 C등급 기업현황과 워크아웃신청비율

(단위: 개, %)



자료: 김석기, 「워크아웃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 금융연구원, 2018, pp. 3~4 그래프를 인용함

- 특히 사업구조조정세제는 상대적으로 구조의 체계가 약하고 산발적으로 존재하여 상시화와 더불어 일련의 구조조정 절차 흐름에 따른 규율이 필요함¹²⁷⁾
- 사업구조조정세제의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이해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126) 김석기(2018), pp. 3~4.

127) 황남석(2017), p. 65.

- 특히, 「법인세법」과 「조특법」 간의 유사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다른 적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상시세제로의 전환은 이러한 이해 가능성의 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구조조정에서는 경영진 또는 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 주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 관점에서는 이를 고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 사업구조조정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채권은행자율협의회, 법원 및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무부처의 장이 계획의 승인 등 일정 부분 통제를 하게 되어 주주권이 제약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감소될 수 있음
 - 특히 워크아웃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대주주 등에 대한 감자 등이 이루어져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조세혜택을 위해 계획에 속하도록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움
- 재무구조개선계획하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지원규모와 과세특례규모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도덕적 해이는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과세특례를 염두에 두고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모든 경우에서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와 사업재편계획에서의 경영진과 주주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비해 보다 완화된 경영권과 주주권 제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채권단의 경우 여러 과세특례에 채권상환의 요건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계획 등에 속하는 것을 유도하거나, 계획하에서 기업 정상화와 관계없이 채권상환을 위한 목적으로만 행동할 수 있음
- 사업재편계획에서는 주주권 제약이나 감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기업활력법」의 적용받지 않아도 됨에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부적 운영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제2절의 가항에서 기술함

2. 과세제도의 정비¹²⁸⁾

가. 공통사항

1) 조세혜택의 수준

- 현물출자 등이나 사업구조조정¹²⁸⁾에 대한 과세특례는 관련 주식 처분 시까지 또는 4년이연 이후 3년간 과세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현물출자 등 과세제도는 관련 주식 처분 시까지, 사업구조조정제도는 대부분 발생일로부터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년간 과세하는 과세이연의 형태로 되어 있음
-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만약 연장하되 장기적으로 일몰종료를 의도한다면 과세이연 수준을 축소하는 형식으로 일몰의 부작용효과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는 현물출자한 주주는 주주의 주식처분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지주회사는 2년 내에 지주회사 요건 등의 미충족, 주주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처분 등의 경우에만 과세됨
 - 이를 외국자회사 주식과 같이 일정기간 이연 후 일정기간 과세와 같은 방식으로 점차 변경하면서 그 기간을 줄여 최종적으로는 일몰종료하는 방법으로, 조세혜택을 축소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일몰 신호를 보낼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9년은 처분시까지 이연, 2020년은 3년 이연 후 3년간 과세, 2012년은 2년 이연 후 3년간 과세하는 방법으로 점차 이연기간을 축소하여 최종적으로는 일몰종료하는 것임

¹²⁸⁾ 지주회사 및 외국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는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기술함

- 사업구조조정 과세특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두 계획 간의 수준과 다른 국가들의 과세제도를 고려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경우 비과세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경우 기업 정상화 시 미국, 영국, 독일은 채무면제익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이연에 비해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됨
 - 과세이연을 할 것인지 비과세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내용으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혜택 부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반면에 사업재편계획은 주주 또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비과세보다는 현재의 과세이연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더구나 사업재편계획의 과세특례는 미국의 상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¹²⁹⁾가 있어 이러한 점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혜택 부여는 어려움
 - 다만, 일본과 같이 투자 등에 대한 과세혜택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선제적 구조조정 측면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시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과잉공급업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법」과는 달리 일본은 신사업활동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거법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임¹³⁰⁾

- 재무구조개선계획에서 과세이연 시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조세채권이 다른 채권에 비해 배당 시 우선순위가 뒤처지므로 과세처분의 이연이 아닌 납부이연 방식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법인세·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세액의 신고일이므로 과세이연 후 법인이 해산·청산되는 경우 원행위(예, 양도·수증·면제)가 발생한 사업연도 신고일이 아닌 과세

1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韓 원샷법까지 美 관세조건」, <http://www.sedaily.com/NewsView/1S0R7QD1D1>, 2018. 6. 10, 서울경제 인터넷판, 검색일자: 2018. 6. 11.

130) 박관훈(2016), p. 93.

이연종료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신고일로 늦춰지게 됨

- 과세특례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기간까지 다른 담보채권의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세가 상대적으로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됨

- 따라서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회사들은 청산·해산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부이연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는 결손금과의 상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제혜택의 수준이 감소하는 효과가 존재함

2) 일부 주식 처분 시 물량흐름의 가정

- 지주회사 및 외국자회사와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의 사후관리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이 우선적으로 처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과세특례의 제한을 두기 위해 강화된 형태의 가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 정책적 판단이 포함된 측면이 있으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 경제적 실질이나 주식의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격합병 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달리 규정되고 있으므로 개별법이나 선입선출법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다른 세제와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함
 - 실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먼저 처분되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도, 무조건 과세특례 해당 주식을 먼저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는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 법인세 산정 시에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시에는 반대로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¹³¹⁾
 - 반면에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¹³²⁾,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¹³³⁾,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¹³⁴⁾ 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세 특례가 적용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

나. 소유구조 개선

1) 자회사 사업폐지 시 지주회사 과세의 적정성

- 지주회사 과세특례에서는 사후관리 요건 중 2년내 자회사 사업폐지 시 지주회사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함
 -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지주회사는 사실상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임

- 현물출자한 주주와 지주회사 그리고 자회사의 연결고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요건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자회사의 일부 사업폐지나 해산·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사업변경은 필요할 수 있음
 - 외국자회사나 기업 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는 이러한 현물출자받은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사업폐지 등의 요건이 없음
 - 따라서, 해산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후관리 요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1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1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7항 제1호 가목

1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8 제4항 제1호

1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처분 시 주주 과세 여부

- 지주회사 과세특례에서는 사후관리 요건 중에 지주회사 과세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 내용은 없음
 - 지주회사가 현물출자일 이후 2년 내에 자회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주주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없음
- 현물출자한 주주와 지주회사 그리고 자회사의 연결고리가 단절되므로 지주회사와 현물출자한 주주의 과세를 동일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주주 과세를 하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특례로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현물출자 차익과 주식의 취득가액

- 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차익이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연이지만 지주회사는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게 되어 차익에 대한 과세효과가 두 번 나타남¹³⁵⁾
 -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연에도 지주회사가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게 되면 지주회사는 발행주식(또는 교환주식)의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인식하게 되어 이 부분 만큼 주주와 지주회사에 이중과세하는 효과가 나타남
- 이러한 형태는 다른 유사 조세특례에서도 반영되어 주식을 출자받는 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시가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사례는 상반되고 있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는 시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영국 등은 출자받는 경우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영국·독일은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135) 이에 대한 설명은 앞의 [그림 II-4]를 참조할 것

-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보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가 불리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운용체계에서는 자산조정계정 인식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임

다. 사업구조조정

1) 「법인세법」상 출자전환 채무면제

- 채무면제는 출자전환으로 인한 것이나 채무 그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다르지 않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다른 대우를 하고 있음
-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 부분은 결손금으로 보전 시까지 계속적으로 이월되거나 일반적인 채무면제는 기간을 한정하여 이월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를 다르게 가져갈 이유가 없으며, 주요국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간의 과세혜택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출자전환을 권장하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면 이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¹³⁶⁾, 이는 기업 상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제에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채무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 자산매각, 주주 자산양도는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채무 인수·변제는 부채비율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사실상 법인의 채권자에게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로 보여질 수 있음

136) 이종교(2014), pp. 309~310.

- 사업구조조정과세특례가 채권자에 대한 지원세제라기보다는 사업근경에 처한 회사에 대한 지원세제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다면 채무인수 변제나 부채비율 요건은 적합하지 않음
 - 국외 주요국의 채무면제 또는 수증에 대한 비과세·과세이연에 있어서도 채무상환 요건이나 부채비율 요건은 확인되지 않음
 - 채무상환 및 부채비율이 회사의 정상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강제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회사 정상화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하나 이는 회사의 감시인 역할을 하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법원 등이 고려할 문제임
 - 채무상환보다 다른 더 중요한 자금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세제가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채무상환 또는 부채비율 관리는 오히려 회사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있음
 - 채권 회수가 될 상황이 아님에도 과세특례를 이용하게 되면 과세특례가 해당하는 만큼 채권자가 혜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함

- 따라서 채무상환 또는 부채비율 관리 등의 요건은 제외하고 이러한 부분은 조세가 아닌 사업구조조정법령에서 기업과 채권자 또는 법원 등과의 관계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¹³⁷⁾
 - 다만, 사업재편계획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비해 경영진 또는 주주의 재량이 상당하므로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37)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및 대주주의 책임 부담 방안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자고 주장함(정래용·최현섭(2016), pp. 223~250.)

3) 주주의 지원 시 다른 주주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 주주가 채무 인수·변제, 주주의 자산양도를 통한 대상법인 지원 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는바, 「조특법」에서는 이 경우 비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증여세과세는 사업구조조정 시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원을 소극적이게 하며, 계획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회사에서 증여목적이 크지 않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회사의 금융채권단이나 법원이 회사의 정상화에 대해 판단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할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함
 - 만약 회사의 정상화 목적과 대주주의 증여목적의 방향이 일치할 경우 이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시됨
 - 더구나 사업재편계획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비해 주주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편법 증여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2017. 11.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도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2017. 12. 6.
- 김동운, 「대규모기업집단과 지주회사」, 『지역사회연구』, Vol. 19, No. 1, 한국지역사회학회, 2011, pp. 21~41.
- 김석기, 「워크아웃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 발표자료(2018. 2. 1), 금융연구원, 2018.
- 김종욱,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법적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2014.
- 곽관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기업법연구』, Vol. 30, No. 2, 2016, 한국기업법학회, pp. 71~97.
- 곽수환·최석봉, 「지주회사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Vol. 17, No. 2, 2008, 한국규제학회, pp. 97~131.
- 권상로, 「지주회사의 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 『법학논총』, Vol. 20, No. 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pp. 517~538.
-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정부, 2017. 9.
- 백재승·박종하, 「지주회사 정보가 주주가치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학회』, Vol. 23, No. 5, 대한경영학회, 2010, pp. 2377~2397.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韓 원샷법까지 美 관세조준」, 서울경제 인터넷판, 2018. 6. 10.
- 신호영·박화윤,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국제회계연구』, Vol. 23,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pp. 77~98.

- 이상은·고영희,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Vol. 17, No. 1, 한국정책개발학회, 2017, pp. 127~163.
- 이중교,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Vol. 20, No. 2, 한국세법학회, 2014, pp. 283~318.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 정도진, 「지주회사전환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및 지배구조투명성 비교」, 『대한경영학학회』, Vol. 21, No. 2, 대한경영학회, 2008, pp. 767~789.
- 정대로·서윤석, 「지주회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2017 OUTLOOK』, 미래에셋대우, 2016. 11.
- 정래용·최현섭, 「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기업법연구』, Vol. 30, No. 4, 한국기업법학회, 2016, pp. 223~250.
- 황남석,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gliederung)에 관한 독일 조직재편세법상의 과세제도 연구」, 『법조』, Vol. 631, 법조학회, 2009, pp. 302~361.
- , 「독일 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Vol. 16, No. 3,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pp. 511~567.
- , 「기업회생세제에 관한 고찰」, 『계간 세무사』, 2017년 봄호, 한국세무사회, 2017, pp. 60~67.
- 川端一眞, 「複數の組織再編等の組み合わせによる租税回避とその否認—取引の一体的把握の是非をめぐって—」, 租税資料館賞第23回入賞作品, 租税資料館, 2014, http://www.sozeishiryokan.or.jp/award/023/z_pdf/ronbun_h26_08.pdf
- 北村導人·黒松昂藏, 「法人税法132條の2(組織再編成に係る行爲計算否認規定)の「不当に」の解釋を示した最古裁判決の検討」, 『PwC Legal Japan News』, 2016. 7, <https://www.pwc.com/jp/ja/legal/news/assets/legal-20160728-jp.pdf>
- 國稅廳, 「法人税法(平成30年度版)」, 『稅大講本』, 2018, 稅務大學校,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kohon/houjin/pdf/09.pdf>

- 小宮正俊・成田智弘, 「組織再編の會計處理と稅務」, 『稅經通信』, Vol. 65, No. 4, 稅務經理協會, 2010, pp. 203~217.
- 菅原計, 「法人稅法第132條の法理とその適用上の可否」, 『經營論集』, Vol. 75, 東洋大學, 2010. 3, pp. 113~127.
- 宮本十至子, 「組織再編成における出國課稅とE U法」, 『立命館經濟學』, Vol. 63, 2015, pp. 345~357.
- Deloitte, 「適格株式交換(移轉)稅制の改正について~平成28年度稅制改正~」, 『Japan Tax Newsletter』, 2016. 8, <https://www2.deloitte.com/jp/ja/pages/tax/articles/bt/japan-tax-newsletter-august2016.html#>, 檢索일자: 2018. 7. 25.
- EY, 「German Newsletter」, 『Issue』, Vol. 3, 2014. 8, https://www.eyjapan.jp/services/specialty-services/global-support/global-newsletter/pdf/Germany_JBS_Newsletter_201408.pdf, 檢索일자: 2018. 6. 13.
- KPMG, 『平成25年度總合調查研究(諸外國の法人課稅に關する調査)調查報告書』, 經濟產業省, 2014,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4fy/E004081.pdf, 檢索일자: 2018. 7. 20.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ETREFF Sanierungserlass: Beschluss des Großen Senats des BFH vom 28. November 2016 (GrS 1/15),” BMF, 2017.
- Christopher Woll, “Post Bruno’s Bankruptcy Planning: An Analysis of Taxable Emergence Structures,” DePaul Business and Commercial Law Journal, Vol. 4, 2006, pp. 277~308.
- Deloitte, “Corporate Tax Rates 2018,” 2018. 2,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corporate-tax-rates.pdf>, 檢索일자: 2018. 7. 30.
- Department of the Treasury, “Bankruptcy Tax Guide,” Publication 908, 2012.

Deutscher Bundestag, 「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5. März 2018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Vol. 5, 2018. 3. 5, <http://dipbt.bundestag.de/doc/btd/19/011/1901126.pdf>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moleg.go.kr/main.html>)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www/main.do>)

國稅廳(<https://www.nta.go.jp/index.htm>)

經濟産業省(<http://www.meti.go.jp/>)

財務省(<https://www.mof.go.jp/>)

內閣府(<http://www.cao.go.jp/index.html>)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http://www.bmjv.de/DE/Startseite/Startseite_node.html)

IBFD(<https://www.ibfd.org/>)

Internal Revenue Service(<https://www.irs.gov/>)

Petersonsullivan LLP(<https://www.pscpa.com/>)

UK Government(<https://www.gov.uk/>)

세법연구 18-03

구조조정 지원세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발 행 2018년 6월 29일

저 자 홍성훈 · 정 훈 · 이서현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34-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